

발간등록번호

76-56700-54-000001-14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지방의회관련법규집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



목 차

I. 조 례

1.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5
2. 창원시의회 공인 조례	34
3.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39
4.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8
5. 창원시의회에서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53
6.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54
7.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55
8.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1
9.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63
10.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70
11.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72
12.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76
13.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81
14.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87

II. 규 칙

1.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91
2. 창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98
3.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104
4.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107
5.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112
6. 창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132
7. 창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138
8.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140
9.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150

Ⅲ. 규 정

1. 창원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157
2.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160
3. 창원시의회 의장·부의장 등 선거관리 규정	165
4. 창원시의회 재무회계 규정	174

Ⅳ. 기타법규

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179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291
3. 국회법	412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487
5.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501
6.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506
7. 창원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	554

○.....

I. 조 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의회사무국) (시행일 : 2017.04.20)

(제정) 2015.07.17 조례 제774호
(일부개정) 2017.04.20 조례 제96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창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나. 창원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전문개정 2017.4.20.]
3. 삭제 <2017.4.20.>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4.20.>

-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안전심의 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9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안전심의 등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7.4.20.]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4.20.]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7.4.20.]

제15조 삭제 <2017.4.20.>

제5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 제16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7.4.20.]

제17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7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4.20.]

제17조의3(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20.]

제18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 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4.20.>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 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7.4.20.]

제20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4.20.]

제7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3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으로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2. 창원시 소속 공무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1조의2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7.4.20.>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3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7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창원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3조(자문료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7.4.20.]

부 칙 〈조례 774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961호, 2017.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4조제3항제1호 관련)

구 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 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17조제1항 관련)

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고시 제2조에 따라 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다.
-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다.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 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지 방 의 회 의 원 겸 직 (변 경) 신 고 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 직	기관· 단체명			
	직 위		재 직 기 간	
내 용	보 수	(택일)연 월	원 원	전 화 번 호
	주 소			
<p>「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창원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font-size: 1.2em;">창원시의회의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4.20>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 (제9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회피직무	<input type="checkbox"/> 의안심사 <input type="checkbox"/> 예산심의 <input type="checkbox"/> 행정감사조사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회의		
회피원인	<input type="checkbox"/>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내용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7.4.20>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제14조제4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 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4.20>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제16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신청자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서명 또는 인)</div>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4.20>

국내외 활동보고서 (제16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7.4.20>

영리행위 신고서 (제17조의3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4.20>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제18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위원회	정당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4.20>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제21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연락처		
	소속위원회 (정당)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 고 취 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4.20>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제17조제7항 및 제22조제3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7.4.20>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제22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 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17.4.20>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제22조제5항제3호 관련)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창원시의회 공인 조례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조례 제 3 호
(일부개정) 2016.07.22 조례 제 8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창원시의회회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창원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창원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창원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와 같다.

제6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 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9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또는 확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재 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 각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각한다.

제12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 각인 또는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공인 조례, 마산시의회 공인 조례, 진해시의회 공인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886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공 인 의 규 격(제5조 관련)

1. 창원시의회의 인 : 3.6센티미터
2. 창원시의회의장의 직인 : 3.0센티미터
3. 창원시의회상임위원장의 직인 : 2.1센티미터
4. 창원시의회사무국장의 직인 : 「사무관리규정」 별표 1 관인의 규격 준용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2.>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관리부서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공인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공 고 등 (구보, 공보 등)	(공고 제 - 호) 년 월 일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방법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자 (분실자)	소속 : 직급 : 성명:
		공 고 등 (구보, 공보 등)	(공고 제 - 호) 년 월 일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관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 사용 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등록(재등록)사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 사용 일 : 년 월 일	
		폐 기 사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비 고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중성지 75g/m²)

창원시의회 포상 조례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조례 제 5 호
(일부개정) 2016.07.22 조례 제 8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이나 공무원 및 단체(외국인도 포함한다) 또는 관내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준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자(단체포함)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숭선수범한 경우
3.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의회업무 등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창원시의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4조에 따른 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시의원 및 각급기관, 단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장 및 감사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제10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주관)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는 의회사무국장이 관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6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 소 또는 소 속

직 성 명

(표 창 문)

20 년 월 일

창 원 시 의 회 의 장

210mm × 297mm(백상지 150g/m²)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 소 또는 소 속

직 성 명

(감 사 문)

20 년 월 일

창 원 시 의 회 의 장

210mm × 297mm(백상지 150g/m²)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 소 또는 소 속

직 성 명

(상 장 문)

20 년 월 일

창 원 시 의 회 의 장

210mm × 297mm(백상지 150g/m²)

주요학력 및 경력			
㉑9 년 월 일	㉑0 이 력	㉑1 년 월 일	㉑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 표장, 표창별로 기록)			
㉑3 년 월 일	㉑4 내 용	㉑5 년 월 일	㉑6 내 용
㉑7 공 적 사 항			
⇒ 공적조서(을)지 작성()			

210mm×297mm(중성지 75g/m²)



공 적 조 서 (을)

(후면)

공 적 사 항

210mm×297mm(중성지 75g/m²)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시행일 : 2017.04.20)

(제정) 2010.07.01 조례 제 6 호
(일부개정) 2010.12.15 조례 제381호
(일부개정) 2012.02.15 조례 제478호
(일부개정) 2017.04.20 조례 제9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창원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원만 될 수 있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17.4.20.]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4.20.>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창원시세를 체납한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재) 위원이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촉되면 해촉일로부터 3년간 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 제12조(실비보상)**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결산검사를 한 기간에만 일비를 지급하며, 의원의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하는 날까지 지급한다.(개정 2010.12.15)
-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 ④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2.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0. 7. 1 조례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10. 12. 15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62호, 2017.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위촉장

주소
성명

귀하를 「창원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창원시 의회의장

210mm×297mm(백상지 150g/m²)

[별표] (신설 2012. 2. 15)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기 준 액
일 비	150,000원/1일
여 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상 시·군·구·자치구의회의원에 해당하는 금액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조례 제 7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진술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증인·진술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2.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 별표 9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창원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조례 제 8 호
(일부개정) 2012.02.15 조례 제4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창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13조에서 제11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2.2.15)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 및 구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해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482호 2012.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의회사무국) (시행일 : 2017.04.20)

- (제정) 2010.07.01 조례 제 9 호
- (일부개정) 2011.03.15 조례 제406호
- (일부개정) 2012.02.15 조례 제483호
- (일부개정) 2012.06.25 조례 제524호
- (일부개정) 2012.09.28 조례 제538호
- (일부개정) 2012.10.29 조례 제544호
- (일부개정) 2013.03.25 조례 제585호
- (일부개정) 2013.10.30 조례 제628호
- (일부개정) 2014.02.07 조례 제653호
- (일부개정) 2014.05.15 조례 제666호
- (일부개정) 2015.02.03 조례 제737호
- (일부개정) 2016.02.15 조례 제856호
- (일부개정) 2016.06.23 조례 제880호
- (일부개정) 2017.04.20 조례 제9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8명 이내 <개정 2014.5.15>
2. 기획행정위원회 : 10명 이내
3. 삭제 <2014.5.15>
4. 경제복지여성위원회 : 11명 이내 <개정 2014.5.15., 2016.6.23.>
5. 환경해양농림위원회 : 10명 이내 <개정 2014.5.15., 2016.2.15.>
6. 문화도시건설위원회 : 11명 이내 <개정 2016.6.23.>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 2. 기획행정위원회
 - 가.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2015.2.3., 2016.2.15.〉
 - 나. 소방본부,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 6. 23.〉
 - 다. 구청의 행정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정 2016. 6. 23.〉
 - 가. 경제국, 복지여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5.2.3., 2016.2.15., 2016.6.23.〉
 - 나.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2.3., 2016.2.15., 2016.6.23., 2017.4.20.〉
 - 다. 구청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 6. 23.〉
- 4.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개정 2016.2.15.〉
 - 가.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6.2.15., 2016.6.23.〉
 - 나.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 6. 23.〉
 - 다. 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2.3., 2016.2.15.〉
- 5.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개정 2016. 6. 23.〉
 - 가. 관광문화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2.3., 2016.2.15., 2016.6.23.〉
 - 나.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구청의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2.3., 2016.2.15., 2016.6.23.〉 [전문 개정 2014.5.15]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면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②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되,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꺾위(闕位)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2.6.25)
-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선출된 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2.15)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2.6.25)

- ② 의장은 상임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의 협의와 해당 위원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의 의결로 상임위원을 개선(改選)하되, 그 협이가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이 배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개선한다. 이 경우 배정된 상임위원은 본회의의 의결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2.1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선출된 부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되,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 또는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해야 할 부위원장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5] <개정 2012.10.29> [제목개정 2012.10.29]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10. 7. 1 조례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진해시의회 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406호 2011. 3.15>

이 조례는 창원시 조례 제403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적용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83호 201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제466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적용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524호 2012.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38호 201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44호 2012.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85호 2013.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28호,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53호, 20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66호, 2014.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5개 분과로 구성하되” 를 “구성하되” 로 한다.

부 칙<조례 제737호, 201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56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80호, 2016.6.23.〉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63호, 201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조례 제 10호
(일부개정) 2010.11.09 조례 제 373호
(일부개정) 2012.02.15 조례 제 4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2.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2.15)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0. 11. 9)

제5조(회기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마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해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11.11.9 조례 제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2.15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조례 제 11 호
(일부개정) 2012.02.15 조례 제 4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창원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공무원"이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및 조사사무에 관하여 집행과 감독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하였던 사람으로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2.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란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이해의 당사자 및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3. "참고인"이란 감사 및 조사사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정인을 말한다.

제3조(감사) ①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12.2.1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3항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록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로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록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⑧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5항의 사항을 기록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지한다.

제5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을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그 해당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2.15.>

제11조(증인선서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선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게 하고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합의하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증인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면 본회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창원시의회에서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3조(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사무감사에 관하여는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5조(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 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록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1조(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또는 관계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관계 위원장이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5)

제22조(과태료) (개정 2012.2.15.) ① 제10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하 이 조례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부과권자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 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부과권자는 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⑧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마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진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479호 201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12. 2. 15)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2조 관련)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3회 이상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2회	2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
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불응 1회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
선서 또는 증언 거부	100만원 이하

(비고)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회사무국)

(제정) 2010.09.20 조례 제 368호

(일부개정) 2014.05.15 조례 제 6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창원시의회 의원(이하 “의회” 또는 “의원” 이라 한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정책·계획·사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의회활동에 수반되는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련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의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⑤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자문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
 ③ 전체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자문위원은 2개 분과까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분과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제6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위원은 자문회의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당시 제4조의 위원임기는 2012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666호 2014.5.15>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5개 분과로 구성하되” 를 “구성하되” 로 한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국) (시행일 : 2017.04.20)

(제정) 2010.11.09 조례 제372호
(일부개정) 2012.02.15 조례 제481호
(일부개정) 2012.12.28 조례 제551호
(일부개정) 2014.12.24 조례 제715호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844호
(일부개정) 2017.04.20 조례 제9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 창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595,180원으로 한다.

〈개정 2012.2.15, 2012.12.28., 2014.12.24, 2015.12.28〉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별표 6(지방의회의원 국외 여비 지급범위)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4.20.〉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창원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 월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7.4.20.]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하여는 창원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7.4.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진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인 2010년 7월부터 10월 까지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조례 제481호 201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551호 2012.12.28.>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15호 2014.12.2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44호, 2015.12.2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64호, 201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지 급 기 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 활동비
지급액	900,000원	200,000원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의회사무국)

(제정) 2010.12.15 조례 제3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사항의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법률고문은 창원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자문절차 등) ①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매일 말일 까지 입법지원 업무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법률 관련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1. 조례 제·개정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최초 의뢰일로부터 1월 이내에 2건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입법·법률자문에 응한 공로를 의장이 인정한 경우
- ③ 고문료는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소송 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승낙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소속

성명

(인)

창원시회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소 속
성 명

귀하를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년 월 일

창 원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3호 서식]

자 문 기 록 부

구분 종류	사건명	의뢰일	의뢰내용	입법·법률 고문 성명	회신일	회신내용	비고

※ 종류란에는 “소송사건”, “이의신청”, “자문”, “법령해석”, “기타” 로 기재한다.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실 기획담당관) (시행일 : 2016.12.28)

(제정) 2010.07.01 조례 제28호
 (일부개정) 2011.01.20 조례 제403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02.13 조례 제576호
 (일부개정) 2016.12.28 조례 제92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회기(「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포함한다)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2.13>

-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12. 28.>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창원시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 1.20, 2013.2.13)

1. 의회 의원 1명
 2. 본청 관련 실·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3.2.13>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 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2010. 7. 1 조례 제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진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심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403호 2011. 1.2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시장” 을 “제1부시장” 으로 한다.

⑪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576호 2013.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행정국 인사조직과)

(제정) 2010.07.01 조례 제 4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마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진해시의회 사무 기구의 설치 및 정수조례는 폐지한다.

○.....

Ⅱ. 규 칙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의회규칙 제 2 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에서 8명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심사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행의 필요성
 - 가.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현장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한다.
 - 나. 지역현안이나 정책개발과 무관한 패키지여행상품의 국외연수나 연례 답습형 해외출장은 억제한다.
 - 다. 여행인원은 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한다.
2. 방문국(기관)의 타당성
 - 가.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방문지역의 사정, 관습·공휴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3.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 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한다.
 - 나. 소요경비는 의원 국외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산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 의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④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려는 사람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진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 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200 . . ~ . (일간)					
여행국						
여행자	소속위원회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10mm×297mm(중성지 75g/m²)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공 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여행효과

210mm×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의 여행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15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 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 차 구 성 예 시

- I. (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및 여행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자료의 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장(속표지)에는 여행국·여행목적·여행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장에 목차를 기록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p>< 보 고 서 ></p> <p>○ ○ ○ ○ 제도</p> <p>(제 목)</p> <p>○ ○ 년 ○ 월</p> <p>(월까지만 표시)</p> <p>창 원 시 의 회</p>	<p>공무국외여행 개요</p> <p>1. 여 행 국 : 2. 여행목적 : 3. 여행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여행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소속위원회</th> <th style="width: 33%;">성 명</th> <th style="width: 33%;">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40px;"></td> <td></td> <td></td> </tr> </tbody> </table>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시 참고사항

-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
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
적인 근거를 명시

- ※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창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의회규칙 제 3호
(일부개정) 2016.07.22 규 칙 제 38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마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진해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은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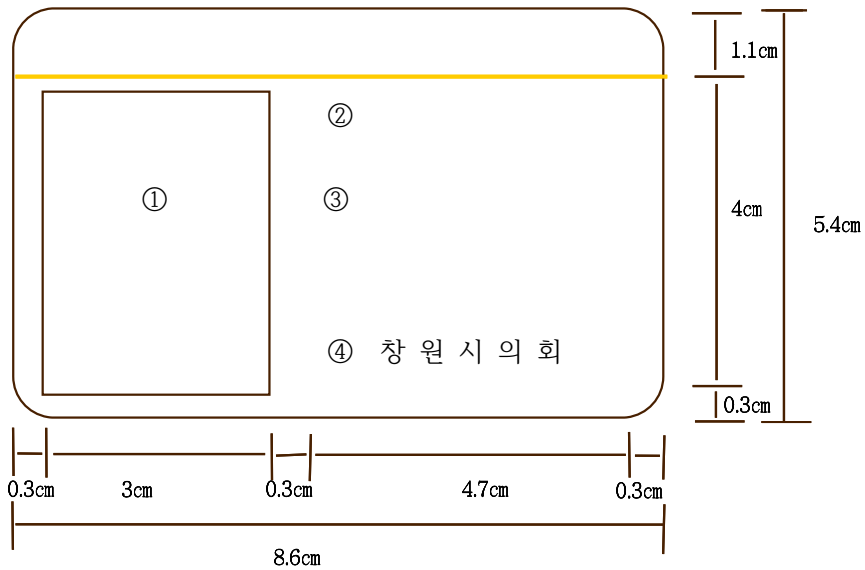
부 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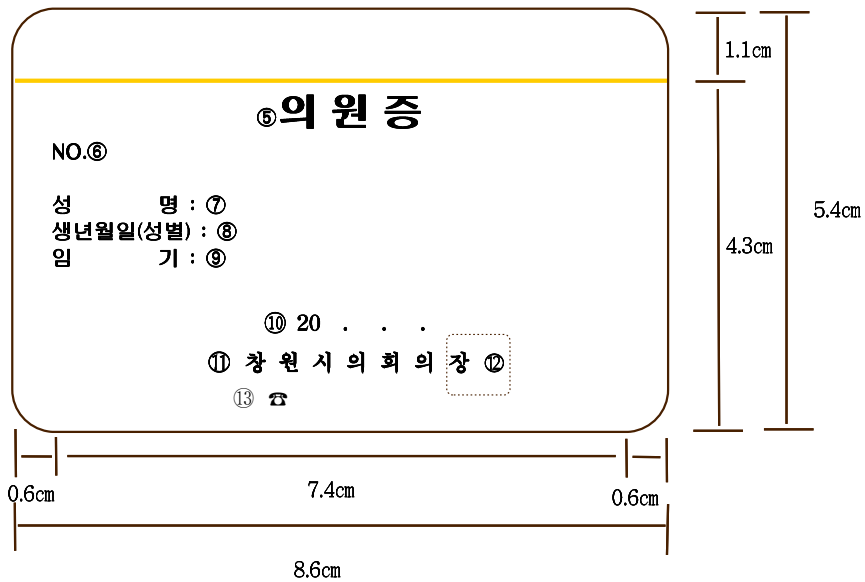
[별표] <개정 2016. 7. 22.>

창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제3조관련)

(앞 쪽)



(뒷 쪽)



비고 : 1. 위의 ①, ②, ③등의 난에는 다음사항을 표기한다.

- ① 사 진 : 3 x 4cm
- ② 한글성명
- ③ 영문성명 : 이름은 처음 글자만 표기(예 : HONG, K. D.)
- ④ 발급기관명
- ⑤ 의원증
- ⑥ 발급번호
- ⑦ 한글성명
- ⑧ 생년월일(성별)
- ⑨ 임 기
- ⑩ 발급일자
- ⑪ 발급기관장의 명의
- ⑫ 발급기관장의 직인
- ⑬ 발급부서의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2.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한글성명	18포인트	바탕체
영문성명	10포인트	
발급기관명	11.5포인트	
의원신분증	15포인트	
발급번호	8포인트	
성명,생년월일(성별),임기	8포인트	
발급일자	8포인트	
발급기관장의 명의	8.5포인트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7.5포인트	

3. 바탕색과 마크색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색 상
앞 쪽	바탕 : 흰색, 상단 띠 : 황색, 의회마크 : 황금색, 글자 : 검정색
뒷 쪽	바탕 : 흰색, 상단 띠 : 황색, 의회마크 : 황금색, 글자 : 검정색

4. 지질은 인쇄용지 190g/m²

5. 재질은 PVC로 한다.

6. 신분증은 구멍을 뚫어 고리나 집계를 달아 매달 수 있다.



[별표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2.>

신분증 발급 대장

결 제	신분증 번 호	발 급 연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신 규 재 발 급	회수 여부	재발급사유	반환	사진	비고

210mm × 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22.>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2. 생년월일(성별)
3. 신분증 번호
4. 재발급신청사유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의회규칙 제 4 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의원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임기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의원이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 이라 한다) 제79조 및 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안을 회부한 때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개최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부의장, 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심문) 위원회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하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록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위임)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진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의회규칙 제 5 호

(일부개정) 2015.12.11 의회규칙 제 1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의회기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 1” 과 같다.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 자 (개정 2015.12.11)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 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 옥외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2.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 와 같다.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5.12.11)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배지양식) ① 의원의 배지양식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5.12.11)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명을 조각한다. [제목개정 2015.12.11]

제9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별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마산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진해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규칙 제16호, 2015.12.1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 12. 11.>

사용표지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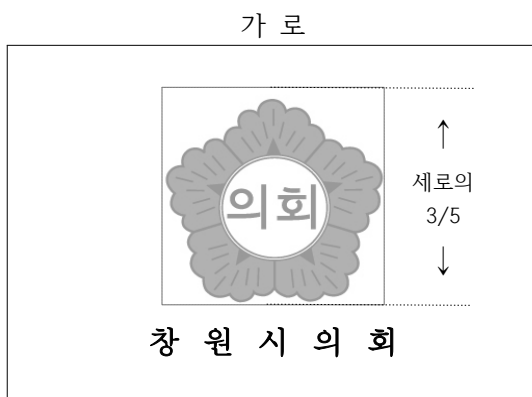


- ▶ “의회” 자 및 무궁화 색상 : 금색
- ▶ 원형내 바탕색 : 백색

[별표 2] <개정 2015. 12. 11.>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

1. 모형 및 규격



- ▶ 가로:세로 = 3:2(실내용 135cm, 90cm
옥외용 210cm, 140cm)
- ▶ 색상 :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백색), 깃발 바탕(하늘색)
- ▶ “창원시의회” 글씨 전체의 폭 : 가로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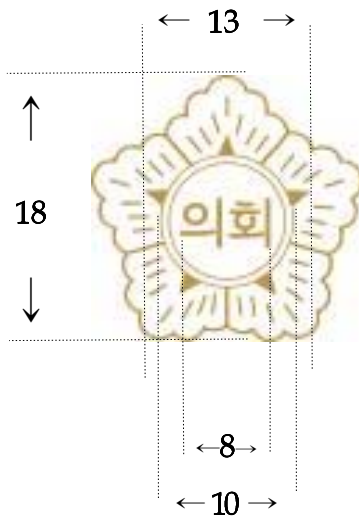
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

[별표 3] <개정 2015. 12. 11.>

의원배지 양식

1. 모형 및 색상



2. 규격

- 가. 무궁화 모형의 직경 : 1.8cm
- 나. 무궁화 모형의 가운데 원의 외경 : 1.0cm
- 다. “의회” 자의 길이 : 0.8cm(서울남산체)
- 라. 꽃대(5지)의 직경 : 1.3cm

3. 재료 및 방법

- 가. 은(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의회규칙 제 6호
(일부개정) 2011.03.04 의회규칙 제 12호
(일부개정) 2012.01.31 의회규칙 제 13호
(일부개정) 2012.11.26 의회규칙 제 1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 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배정한 다음 비례대표는 당선인이 많은 정당순서에 따라 정당별로 공고한 의원명단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록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록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 ⑤ 의장,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 또는 의원 당선자는 선거 2일전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하며, 정견발표 시에는 본인의 정견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비방하는 발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발표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서로 한다.

-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다수의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가 된다.

제11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1조의2(의장·부의장의 겸직금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31)

제3장 회 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휴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휴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사일정

-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록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2.1.31)
-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 (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보고 또는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회기연장 및 휴회에 관한 건
2.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
3. 의원의 청가에 관한 건
4.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에 관한 건
5.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안건회부에 관한 건
6. 법 제109조제2항 규정의 선결처분에 관한 승인의 건
7. 그 밖에 의장이 제의하는 경미한 안건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본회의 개의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개정 2012.1.31.)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

1. 의장·임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선임·개임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7. 의원의 청가(5일 초과인 경우를 말한다)에 관한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변경의 건
13.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 14.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 15.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을 요하는 의안
- 1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4조(전문가의 활용) 의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동의를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는 동의자의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7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8조(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변안) 변안동의를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제30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1조(재 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 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2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 언

제34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④ 발언의 신청시간은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안건이 토론종결 된 경우와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할 수 없다.

제35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된다.

제37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8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 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0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 5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그 발언취지의 원고를 기록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④ 의장은 발언취지의 원고를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3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두 명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 결

제45조(표결의 선포 등)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6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7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8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거수·기립 또는 기명·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12.1.31)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 제49조(투표절차)** ① 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 ② 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들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 제50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6절 회 의 록

- 제51조(회의록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 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2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회의에서 선출된 두 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록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4조(회의록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구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장 위 원 회

제5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11.26>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7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한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8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59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31)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2조(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3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4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전,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5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전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6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전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7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전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전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 〈개정 2012.11.26〉

제68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9조(예산안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 3. 4) (개정 2012.1.31)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1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2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기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1.31)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4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시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1문 1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보충질문은 할 수 없다.

③ 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및 질문대상자 등을 기록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76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6조의2(시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의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요구한 서류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면 이를 해당의원에게 지체없이 배부한다.〈개정 2012.1.31, 2012.11.26〉

제77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78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질 서

제82조(경호) ①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3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84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5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6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7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록)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8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흥기 또는 위험물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주기가 있는 사람

3. 삭제<2012.11.26>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할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9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0조(녹음,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윤리심사와 징계

제91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 윤리심사대상 의원 또는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록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필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록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윤리심사대상 또는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2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제9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91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집회 일부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3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4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계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부 칙 <제정 2010. 7. 1 규칙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마산시의회 회의 규칙, 진해시의회 회의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11. 3. 4 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1. 31 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11. 26 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의회규칙 제 7 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창원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작성·첨부 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 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었을 경우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하였을 경우
3.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경우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진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청원건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개의원	(서명 또는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u>철회요구사유</u>			

II
규
칙

210mm × 297mm(중성지 75g/m²)

창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의회규칙 제 8 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접수) ①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국장이 접수한다.

② 진정서 등은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제4조(처리 및 결과통지) ①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의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결과를 즉시 진정인에게 통지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정서 등을 접수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고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진정인을 참석시켜 의견청취 및 의견개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진정서 등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 등의 내용이 분명치 아니한 것
-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 이를 폐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마산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진정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진정서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의회규칙 제 9호
(일부개정) 2011.01.12 의회규칙 제 1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7명 이상의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연구단체 대표의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원은 연구단체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제4조(등록 및 취소)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 1호서식” 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 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2)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참조하여 의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역할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2.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 4.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2)
- ④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그 결과를 참조하여 지원여부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확정된 연구활동비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의 변경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조하여 승인여부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규정 등 제정) 이 규칙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0. 7. 1 규칙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 지원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1. 1.12 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대표의원 :
3. 설립목적 :
4. 구성의원 : 인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의 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의회 의장 귀하

210mm × 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동신고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연구단체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의 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의회 의장 귀하

210mm × 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년도 연구활동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액	금 원(W)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의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의회 의장 귀하

210mm × 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심의결과 통보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의원
연구주제	
심의결과	
기타	

년 월 일

창원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창원시의회 의장 귀하

210mm × 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활동비	총액	금 원(W)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비고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의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의회 의장 귀하

210mm × 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 결과	결과요약	
연 구 활 동 비	수령액	금 원(W)
	집행액	금 원(W)
	잔액	금 원(W)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붙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의원 :

(서명 또는 인)

창원시의회 의장 귀하

210mm × 297mm(중성지 75g/m²)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행정국 인사조직과)

(제정) 2010.07.01 의회규칙 제 1호
(일부개정) 2012.01.31 의회규칙 제 14호
(일부개정) 2014.06.30 규 칙 제 31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31)

제3조(하부조직) 사무국장 밑에 의회담당관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1.31.)

제4조(의회담당관) 의회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 소관 사무를 겸임한다.

1. 위원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전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3.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4.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자치입법 업무 지원
5.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6.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좌
7.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8.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업무 지원
9. 위원회 의정활동 홍보 및 소관 예산 집행
10. 상임위원회 소관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6조(세부 사무분장) 사무국의 세부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마산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진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규칙 제14호 2012.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13호, 2014.6.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4. 6. 30.>

전문위원별 직급(제5조 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급(5급)	직 급(6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경제복지문화여성 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보건주사·
환경해양농림축산 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환경주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별표 2] <개정 2014. 6. 30.>

의회사무국의 세부 사무분장(제6조 관련)

부서명 (담당수)	세 부 분 장 사 무
의회담당관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 2. 개원식 등 각종 의식행사 전반 3. 예산편성 및 일상경비 집행 관리 4. 인사(정규직, 기타직 일체) 및 복무관리 5. 각종 시책업무 추진 전반 6. 의장, 부의장 지시 및 공약사항 관리 등 7. 전국 및 도내 시군구의회 업무 추진 8. 각종 보고사항 자료 취합·작성(의장, 부의장, 국장 등) 9. 의원재산등록 및 병역사항 관리 10. 의원연찬회 및 간담회 개최 관계 11. 보안 및 기록물관리 12. 경력증명서 발급 등, 표창관리 13.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의 관계 14. 의원등록에 관한 사항 15. 무기·기간제근로자, 인턴관리 등 16. 회의실 관리 등 17. 사무일반 18. 소모물품 구입·관리 19. 의회방문기념품 관리 20. 방청허가업무 21. 청경 및 청소인부 관리 등 22. 의장 및 부의장 부속실 관리 23. 의장 수행업무 24. 각종 시설공사·용역 및 물품구입 계약 25. 회계관련 규정 제·개정 26. 업무추진비 지출(의회비 포함) 27.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8.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29. 급여 및 근로소득세 정산 등 30. 일상경비 31. 물품 및 재산 관리 32. 차량 및 채권 관리 33. 업무용차량(승용, 승합) 관리 및 운행 34. 본회의 의사 진행 35. 연간 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부서명 (담당수)	세 부 분 장 사 무
	36. 정례회, 임시회 의사운영 일반 37. 본회의 의사진행업무 전반 38. 각종 의안 접수·처리 업무 전반 39.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업무 40.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관리 41.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 42. 시정질문 관리 43. 5분자유발언 관리 44. 서면질문서 접수·처리 45. 의안 배부·관리 46. 진정·청원서 접수 처리 47. 회의록 교정·취합 및 배부 총괄 48. 기록담당업무 전반 49. 회의록 전산화 및 인터넷 서비스 구축 50. 시정질문, 답변처리카드 전산화 업무 51. 본회의·의회운영·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속기·번문·교정업무 전반 52. 의정홍보계획 수립 53. 의정백서 및 각종 간행물 발간 등 54. 신문 구독·배부 55. 방송·음향시설 운영 관리 56. 인터넷 생방송 자료제작 및 편성 57.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 및 자료 관리 58. 전산서브장비 유지관리 59. 방화벽 및 네트워크장비 관리 60. 무선인터넷장비 유지관리 61. 인터넷방송 운영관리 62. 홈페이지 운영관리 63. 의정활동 사진 촬영·관리 64. 공보업무 전반 65. 의원입법 조례안 등의 법제업무 협조 66. 자치법규 제·개정안 연구 검토 67.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영 68. 자치법규관련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법령개선안 검토 69.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70. 의회 학술용역 수행

○.....

Ⅲ. 규 정



창원시의회장에 관한 규정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의회훈령 제 1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집행위원회는 총무·의식·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 ⑤ 집행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시 시의회의장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장 제 비 기 준

사 항 별	규 격	수 량	비 고
신문광고	3단 15cm	2개사 이내	지방일간지
영결식장설치	건물면적 6m × 3m = 18m ² 높이 3.0m	1식	16.6m ²
영 구 차	중 형	1대	1일간
현화용 꽃 및 근조 리본 등			
가. 헌 화	특대 대	1개 10개	장의위원장용 유족 및 집행위원장용
나. 흉 화	특대 대	1개 50개	장의위원장용 집행위원장 및 위원장용
다. 근조 리본	흑색	300개	조객용
라. 장 갑	백색	50족	종사원용
마. 영구차 리본	대형	1개	
조 화	대형	1개	의장 명의
안내문 인쇄	모조 32절 180g/m ²	500부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의회훈령 제 2 호
(일부개정) 2012.02.07 의회훈령 제 4 호
(일부개정) 2013.04.19 의회훈령 제 8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함으로써 사무 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 의장, 사무국장, 담당관 및 전문위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7)

① 의장의 결재사항

1. 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2.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3.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4.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 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②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1. 정책 결정에 필요한 보고
2.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위원회, 집행부 이송)
3. 일반 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 추진
4. 사무의 인계, 보고의 처리
5. 수리하지 아니할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6. 법령 등에서 요건이 확정되어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

③ 담당관, 전문위원 전결사항 (개정 2012.2.7)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소관업무의 지도 감독
4. 일상적·반복적인 집행 업무
5. 그 밖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 제4조(단위업무 전결사항)** ① 제3조 이외의 각종 단위 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 ② 위임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별도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③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 ④ “별표”에 규정된 전결한계에 의한 기결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2차 하급 결정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18>

-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계획,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3.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4호 2012.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8호 2013.4.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3. 4. 18.>

전 결 사 항

업 무 내 용	전결권자		의장	비고
	담당관, 전문위원	국 장		
1.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	
2. 의원의 청가, 결석에 관한 사항			○	
3. 의원의 출장, 해외시찰 및 연수			○	
4. 의원의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	
5. 집회 공고			○	
6. 의사일정 작성			○	
7. 회의록 작성 발간		○		
8. 의회결과 이송		○		
9. 방청권 발급	○			
10. 의안 배부	○			
11. 의결문서 이송		○		
1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			
13. 의안의 검토 보고		○		
14. 의회운영 기본 계획			○	
15. 행사				
가. 기념·의식 행사			○	
나. 의회 중요 행사			○	
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		○		
16. 감사장 수여, 표창			○	
17. 감사, 조사계획 수립			○	
18. 자료제출 요구서 처리		○		

업 무 내 용	전결권자		의장	비고
	담당관, 전문위원	국 장		
19. 소속 공무원 출장명령 및 복명				
가. 5급이상		○		
나. 6급이하	○			
20. 소속 공무원 휴가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가. 5급이상		○		
나. 6급이하	○			
21. 소속 공무원 조퇴, 외출, 특근명령				
가. 5급이상		○		
나. 6급이하	○			
22. 직원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			
23. 시민의 권리, 의무 및 다수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진정 및 건의처리			○	
24. 집행부 관련 진정 및 건의처리		○		
25. 의회관련 규칙 및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공포			○	
26. 법규 해석에 대한 질의응답	○			
27. 6급이상 공무원 보직 부여		○		
28. 7급이하 공무원 보직 부여	○			
29. 직원 배치 및 사무분장	○			
30. 보안에 관한 업무	○			
31.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요구		○		
32. 의회사무국 예산의 결산		○		
33. 의회청사 시설 및 장비관리	○			
34. 물품 수급 관리		○		

업 무 내 용	전결권자		의장	비고
	담당관, 전문위원	국 장		
35. 의정활동 관련 예산집행 품의				
가. 의정활동비	○			
나. 회의 수당	○			
다. 여 비	○			
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 의장	○			
2) 부의장, 상임위원장	○			
36. 문서수발, 통제, 보관, 이송	○			
37. 공인신조, 개각, 폐기			○	
38. 공인 관리	○			
39.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			
40. 의회 보조자료 제공		○		
41. 의회사 및 의정백서 편찬			○	
42. 각종 홍보지 발간			○	

창원시의회 의장 · 부의장 등 선거관리 규정

(의회사무국)

(제정) 2010.07.01 의회훈령 제 3 호
 (일부개정) 2012.05.04 의회훈령 제 5 호
 (일부개정) 2012.06.05 의회훈령 제 6 호
 (일부개정) 2014.05.30 의회훈령 제 9 호
 (일부개정) 2016.06.29 의회훈령 제 11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에서 수행하는 선거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고 질서 있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장(이하 “의장단” 이라 한다) 선거에 한한다.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창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장 선거관리

제4조(선거관리 업무) 선거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련 일체의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 접수
3. 투 · 개표사무 진행
4. 각종 선거문서 관리
5. 당선자 확정통지
6.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

제5조(선거관리 업무수행) 선거관리 업무는 의회사무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당선자 확정 통지는 해당 선거 후 의장 또는 의장 직무대행의 당선자 결정 선포 행위로 대신한다.

- 제6조(선거공고)** ①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의장단 선거에 관한 공고는 의원 당선 이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의 집회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가 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후보자

- 제7조(후보자 등록 및 사퇴)** ① 의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해당 선거일 2일 전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의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은 중복 신청 할 수 없다.(개정 2012.5.4, 2012.6.5)
- ②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1일 전 오후 6시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거나, 해당선거 전까지 신상발언 등을 통해 사퇴할 수 있다.(개정 2012.5.4)

제8조(후보자 명부 배부) 후보자 명부는 선거당일 의원에게 배부한다.

제9조(정견발표 순위)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서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장 후보자 정견발표는 상임위원회 직제에 따른 후보자 등록 순서로 한다.(개정 2012.5.4)

제4장 선거운동 및 투표·개표사무

제10조(선거운동 금지 등) ① 입후보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중상모략 등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② 필요할 경우 후보자 상호 협의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를 기표식으로 할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고 기명식으로 할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기표식에 사용하는 기표 용구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에서 정한 기표 용구를 사용한다.

- ② 투·개표사무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본회의에서 지명된 감표위원의 감독에 따른다.
- ③ 감표위원은 선거구순으로 정하되 2명 이내로 한다.
- ④ 후보자는 감표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
3. 후보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것
4. 후보자 성명에 직위 등을 함께 표기한 것
5. 기명란 밖에 표기한 것
6. 의장·부의장 선거 시 2명 이상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한 것
7. 상임위원장 선거 시 해당 상임위원장별 기명란에 2명 이상의 후보자 성명을 기재한 것
8. 기표식인 경우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해당하는 것
9. 그 밖에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유효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제13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감표위원은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의 선거 투표 용지와 “별지 제5호 투표결과 집계표” 를 의회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를 각 당선자의 임기만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외의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해시 의회 의장 등에 대한 선거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12.5.4 훈령 제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6.5 훈령 제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5.30 훈령 제9호>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29 훈령 제1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6. 5, 2014. 5. 30, 2016. 6. 29>

선거 투표용지

□ 의장 · 부의장 선거용

제○대 창원시의회 ○반기 의장·부의장선거	<h1 style="font-size: 2em; margin: 0;">투 표 용 지</h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20px auto;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확 인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5px auto; padding: 5px;"> 의 회 사 무 국 장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순번</th> <th style="width: 45%;">후보자명</th> <th style="width: 40%;">기표란</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순번	후보자명	기표란												
순번	후보자명	기표란															

※용지지질 : 기명란의 표기사항이 투시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함.

□ 상임위원장 선거용(기표식)

제○대 창원시의회 ○반기 상임위원장(보궐)선거	<h1 style="font-size: 2em;">투표용지</h1>	확인						
		의회사무국장						
			위원장별	순번	후보자명	기표란		
			의회운영 위원장					
			기획행정 위원장					
			경제복지 여성 위원장					
			환경해양 농림 위원장					
			문화도시 건설 위원장					

※ 투표방식에 따라 단기표식 투표용지로 사용 가능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5. 30, 2016. 6. 29>

선거 투표용지

□ 상임위원장 선거용(기명식)

제○대 창원시의회 ○반기 상임위원장(보궐) 선거	투 표 용 지	확 인	상임위원장별 기 명 란
		의 회 사 무 국 장	의 회 운 영 위 원 장
		의 회 사 무 국 장	기 획 행 정 위 원 장
		의 회 사 무 국 장	경 제 복 지 여 성 위 원 장
		의 회 사 무 국 장	환 경 해 양 농 림 위 원 장
		의 회 사 무 국 장	문 화 도 시 건 설 위 원 장

※ 투표방식에 따라 단기명식 투표용지로 사용 가능함.

창원시의회 재무회계 규정

(의회사무국)

(제정) 2013.01.28 의회훈령 제 7 호
(일부개정) 2015.02.27 의회훈령 제 1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창원시 재무회계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위임한 회계관직 직무위임 범위 및 예산 집행 품의의 전결규정 범위를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관 직무위임) 의회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미만)
3.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3조(재무관 직무위임) 의회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5.2.27.〉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목개정 2015.2.27.]

제4조(예산집행 품의) 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무국장, 담당관 및 전문위원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2.27.〉

1. 사무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사항 및 조달물자 구매에 관한 사항〈개정 2015.2.27.〉
2. 담당관 및 전문위원 :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제조·용역

및 그밖에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와 봉급·수당 등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제5조(재정사항의 합의)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창원시 재무회계규칙 제22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의회훈령 제7호, 2013.1.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의회훈령 제10호, 2015.2.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IV. 기 타 법 규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강(總綱)</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5.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p>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p> <p>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p> <p>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관계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p> <p>제3조(관할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1.5.30></p> <p>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11.5.30></p> <p>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p>	<p>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개정 2011.10.14></p>
<p>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p> <p>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p> <p>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조 삭제 <2011.10.14></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개정 2009.4.1., 2010.4.15., 2011.7.14., 2013.3.23., 2014.6.3., 2014.11.1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p>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7.14, 2013.3.23, 2014.6.3., 2014.11.19., 2017.7.26.〉</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⑥ 행정안전부장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p> <p><개정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9.4.1></p> <p>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⑨ 행정안전부장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 2013.3.23., 2014.11.19., 2017.7.26.></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p> <p>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p> <p>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9.4.1]</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5조(구역의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5조 삭제 <2011.10.14></p>
<p>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p> <p>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p>	<p>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개정 2016.1.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시·군 또는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특별자치시 및 시·군·자치구: 읍·면 또는 동 <p>[전문개정 2011.10.14]</p>
<p>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p>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p>④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p>② 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채}) \div \text{일반회계 예산}\} \times 100$ <p>③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p> <p>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p> <p>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p> <p>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p> <p>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p> <p>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p> <p>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p> <p>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p> <p>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p> <p>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p>	<p>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p> <p>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p> <p>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p> <p>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p> <p>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p> <p>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p> <p>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p> <p>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p> <p>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p> <p>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p> <p>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p> <p>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p> <p>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p> <p>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p> <p>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p> <p>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p> <p>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p> <p>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p> <p>다. 농업자재의 관리</p> <p>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p> <p>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p> <p>바. 농가 부업의 장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사. 공유림 관리</p> <p>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 사업</p> <p>자. 가축전염병 예방</p> <p>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p> <p>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p> <p>타. 중소기업의 육성</p> <p>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p> <p>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p> <p>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개발사업</p> <p>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p> <p>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p> <p>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p> <p>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p> <p>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p> <p>사. 자연보호활동</p> <p>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p> <p>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p> <p>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p> <p>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p> <p>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p> <p>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p> <p>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p> <p>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p> <p>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p> <p>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p> <p>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p>	
<p>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p> <p>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p> <p>1. 시·도</p> <p>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p> <p>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p> <p>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p> <p>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p>	<p>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p> <p>① 삭제 <2008.10.8></p> <p>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8></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p> <p>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p> <p>2. 시·군 및 자치구</p> <p>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p> <p>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p>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이하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의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8.13]</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p> <p>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p> <p>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p>	
<h2>제2장 주 민</h2>	
<p>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p>	<p>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 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p>	<p>제13조(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 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p> <p>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공포가 있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4></p> <p>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p>
<p>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p> <p>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14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6.1.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p>4. 서명 연월일</p> <p>②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p> <p>③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9.8.13]</p> <p>15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p> <p>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p> <p>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p>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p> <p>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p>	

<p>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수 있다. <개정 2009.4.1></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p> <p>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4.1></p> <p>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 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p> <p>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4.1></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p> <p>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p> <p>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규칙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7.14]</p>	
<p>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삭제 <2016.1.12></p> <p>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28조에</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p> <p>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p> <p>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p> <p>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p> <p>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1></p>	<p>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14></p> <p>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 의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p> <p>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9.4.1></p>	
<p>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p>	<p>제17조(청구요건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p>②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8.13.></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p> <p>3. 계율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p> <p>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 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 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p> <p>③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p> <p>④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p> <p>1. 제1항제1호의 경우 : 해당 60일이 끝난 날(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p> <p>2. 제1항제2호의 경우 :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p> <p>3. 제1항제3호의 경우 :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p> <p>4. 제1항제4호의 경우 : 해당 이행 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p> <p>⑤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⑥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⑦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p> <p>⑧ 법원은 제6항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p> <p>⑨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p> <p>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직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⑪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로 본다.</p> <p>⑫ 제11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p> <p>⑬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p> <p>⑭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⑮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소정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p> <p>⑯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⑰ 제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p>	
<p>제18조(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7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불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p>	<p>제18조 삭제 <2011.10.14></p>
<p>제19조(변상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p>	<p>제19조(주무부장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변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p> <p>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처리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그 부처로 하여금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 감사청구를 일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①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는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조례·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21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조례와 규칙</p> <p>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p>	<p>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주무부장관은 해당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에 못 미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p> <p>제21조(감사 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 제1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0.13></p> <p>제22조(감사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감사 실시 개요와</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p> <p>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23조(부처 간 협조)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p> <p>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감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4조(공표 방법 등)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p>	<p>제25조(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1.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2조제2항,</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p> <p>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p>	<p>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공포를 한 경우</p> <p>2.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p> <p>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p> <p>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p> <p>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7.14></p> <p>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p>	<p>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10.14></p> <p>⑤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⑥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p>	<p>제27조(청구서 등의 서식) 제12조에 따른 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 제13조에 따른</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p> <p>③ 삭제 <2009.4.1></p> <p>④ 삭제 <2009.4.1></p> <p>⑤ 삭제 <2009.4.1></p>	<p>위임신고서 및 신고증, 제14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제20조에 따른 대표자증명서의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p>
<p>제2장 조례와 규칙</p>	
<p>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선거</p> <p>제29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p> <p>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8.13></p> <p>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p> <p>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지방의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조 직</p> <p>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개정 2014.1.21></p> <p>제31조(지방의회위원의 선거) 지방의회위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지방의회의원</p> <p>제32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p>	<p>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p> <p>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p> <p>제31조(공포일)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p> <p>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 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p>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p> <p>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지방의회</p> <p>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p>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p>
<p>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4.18.></p>	<p>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p> <p>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p>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8.10.8></p> <p>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0.8., 2014.6.3></p> <p>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p>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을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2014.6.3></p> <p>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p> <p>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p> <p>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0.8></p> <p>⑩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p> <p>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은 제외한다)</p> <p>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p> <p>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p> <p>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업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p> <p>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p> <p>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p> <p>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p> <p>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p> <p>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p> <p>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p>	<p>액으로한다</p> <p>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p> <p>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p>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p> <p>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p> <p>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p> <p>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p> <p>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7></p> <p>③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讓與)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37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체포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②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p> <p>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p> <p>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제3절 권 한</p>	
<p>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p>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p> <p>5. 기금의 설치·운용</p> <p>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p> <p>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p> <p>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p> <p>9. 청원의 수리와 처리</p> <p>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p> <p>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p> <p>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p>
<p>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p> <p>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p>	<p>제4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p> <p>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p> <p>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p>	<p>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 제40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p>② 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p> <p>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4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p> <p>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 27조를 따른다.</p> <p>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의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p> <p>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7.14]</p> <p>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p>	<p>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4.9.24></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p>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p> <p>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소집과 회기</p> <p>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p> <p>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p>	<p>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p> <p>44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p> <p>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p>
<p>제45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p> <p>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 최다선의회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7.14></p> <p>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4></p>	<p>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p>
<p>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6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피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p> <p>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p> <p>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p> <p>제47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5절 의장과 부의장</p>	
<p>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신설 2011.7.14></p> <p>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7.14></p>	<p>제48조(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p>	<p>제49조(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p>	<p>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 <p>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p>
<p>제5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제51조 삭제 <2011.10.14></p>
<p>제52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p>	<p>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53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p> <p>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53조(대리 출석·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 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p>	<p>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p>	<p>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1.12.>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p>	<p>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고 등) 지방의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6절 위 원 회</p>	
<p>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p>	<p>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p> <p>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통고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면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③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p> <p>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p> <p>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8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59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 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61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p> <p>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7.14]</p>	<p>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1조(의원의 사직) ① 지방의회 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의회는 법 제77조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p>
<p>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62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법 제7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p> <p>②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p> <p>③ 피심의원은 지방의회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 있다.</p>
<p>제7절 회 의</p>	
<p>제63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p>	<p>제63조(사무직원의 겸무) 법 제90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한다.</p> <p>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p>	<p>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p> <p>제6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9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1.20]</p>
<p>제4장 집행기관</p>	
<p>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p>
<p>제64조의2(표결의 선포 등) ①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p> <p>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p>	
<p>제6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p>	<p>제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 ① 법 제9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p> <p>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p> <p>[제목개정 2011.7.14]</p>	<p>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p> <p>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p> <p>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p>	<p>제66조(사무인계) ① 법 제10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임기만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p>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p> <p>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7.14]</p> <p>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7.14]</p>	
<p>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7조(사무인계서) 제6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및 잔고증명 4. 기획 중 또는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p>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p>	<p>제68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p> <p>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p> <p>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참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6조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6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p>제69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7조 각 호의 사항 중 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사무인계서의 해당부분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p> <p>제7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26조와 법 제107조 또는 법 제108조에 따른 재의(再議)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72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p> <p>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p> <p>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p> <p>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p>	<p>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p> <p>제72조(선결처분) ① 법 제109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3.3.23., 2014.11.19., 2017.7.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절 청 원</p> <p>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p>	<p>제73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p> <p>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12.6.29></p> <p>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13., 2012.6.29></p> <p>④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 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도의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 2012.6.29., 2014.6.3></p> <p>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8.13></p> <p>⑥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8., 2009.8.13></p> <p>⑦ 시·군과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4.12.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 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 부이사관 3.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 지방 이사관 <p>⑧ 제7항을 적용할 때에 인구는 해당 시·군이나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 해 말 인구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한다. 2. 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평균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p>	<p>인구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하향조정한다.</p> <p>3.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되는 경우 신설된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p> <p>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이사관, 별정직 2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0.11.2., 2013.11.20></p> <p>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히 처리하여야</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p> <p>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할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p> <p>④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⑤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11.2></p> <p>제75조(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라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6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5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과 전문대학 등을 설치·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2. 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p>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p> <p>제77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p> <p>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p>	<p>제77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p>제78조(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p> <p>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p> <p>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p>	<p>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p> <p>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p> <p>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1.10.14></p> <p>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p> <p>2.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p>
<p>제79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p>	<p>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p> <p>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p> <p>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p> <p>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p>
<p>제80조(자격상실의결) ① 제79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② 피심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p>	<p>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p> <p>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81조(궐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闕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p>	<p>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13]</p> <p>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3]</p> <p>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13]</p> <p>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개정 2010.11.2>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절 질 서</p> <p>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p> <p>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p> <p>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재 무</p> <p>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p>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p>	<p>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p>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6.1.12., 2017.7.26.></p>
<p>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p> <p>제85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p> <p>③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p> <p>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p>	<p>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③ 법 제1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의결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절 징 계</p> <p>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p> <p>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p> <p>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p>	<p>제86조(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48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49조제5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89조(간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간사는</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p> <p>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p> <p>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p>	<p>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90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p> <p>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p> <p>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p>	<p>제91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3.7.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p>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p>	<p>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에게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p> <p>제92조(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h2>제6장 집행기관</h2>	
<h3>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h3>	
<h4>제1관 지 위</h4>	
<p>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11.5.30></p>	<p>제93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p>	<p>제94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87조와 제92조의 규정은 준용한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p>	<p>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95조(행정협의회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p>
<p>제96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09.4.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p>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6. 교원</p> <p>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p> <p>8.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검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p>	
<p>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p>제9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p>	<p>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p> <p>제9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p>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p> <p>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 의안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p> <p>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p>	<p>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p>
<p>제2관 권 한</p>	
<p>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p>	<p>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p>	<p>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p> <p>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p>	<p>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국가의 지도·감독</p> <p>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66조와 제167조에 따른 조언·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수립·결정·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제104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4.]</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p>	<p>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 조정 절차)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 신청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06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p>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106조(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p>	
<p>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p>	<p>제107조(실무위원회)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앞서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법제처차장,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부지사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p>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을 준용한다.</p>	<p>제108조(간사)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p> <p>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0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보조기관</p> <p>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p> <p>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p>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1.5.30></p> <p>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p>	<p>제110조(준용)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제87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p>	
<p>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1.5.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p>	<p>제111조(명령·처분의 취소·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명령·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p> <p>[2011.5.30 법률 제10739호에 의하여 2010.9.2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함.]</p>	<p>2. 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p>
<p>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112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법 제17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제1호와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1.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경우</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p> <p>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p>	<p>2. 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집행(代執行)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p> <p>3. 법 제170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p> <p>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p>
<h3>제3절 소속 행정기관</h3>	
<p>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제113조 삭제 <2010.10.13.></p>
<p>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6조제3항, 법 제107조제1항 또는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1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법 제107조제3항 및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4. 법 제17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한 경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5. 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p>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9.4.1]</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하부행정기관</p> <p>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p>	<p>2. 법 제172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p> <p>3. 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p> <p>제116조(판결 등의 공시) 제114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p> <p>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① 법 제173</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p>	<p>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p> <p>② 자치구 상호 간의 자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6.29]</p>
<p>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p> <p>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p>	<p>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법 제175조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관할 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한다.</p> <p>[본조신설 2008.10.8]</p>
<p>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p> <p>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p> <p>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p> <p>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재 무</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p> <p>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p> <p>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1. 「정부조직법」 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p>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p> <p>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p> <p>4. 국가가 설립·구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p> <p>④ 국가는 제3항의 기관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p> <p>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p> <p>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p> <p>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예산과 결산</p> <p>제125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p> <p>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p> <p>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28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p>	
<p>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p>제131조의2(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때의 예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7.14]</p> <p>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본조신설 2011.7.14]</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수입과 지출</p> <p>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p> <p>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p> <p>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p> <p>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p> <p>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p> <p>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p> <p>제1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p> <p>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p> <p>제143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讓與)·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p> <p>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보 칙</p> <p>제145조(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p> <p>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p> <p>제147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p> <p>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⑤ 제4항의 조정결정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1항의 조정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⑦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70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p> <p>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p> <p>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p> <p>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p> <p>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15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제2절 행정협의회</p>	
<p>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p> <p>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 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출, 의견 개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157조(협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p> <p>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58조(협회의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의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p> <p>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p> <p>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p> <p>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p> <p>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p> <p>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p>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p> <p>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p> <p>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p>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7.14></p> <p>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p> <p>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14></p> <p>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14></p> <p>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2014.11.1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p>④ 그 밖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p>	
<p>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6.8,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6.8,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7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2. 제171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p>③ 제167조, 제171조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에 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0.6.8]</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p> <p>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개정 2011.5.30.></p> <p>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p> <p>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p> <p>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p>	
<p>부 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p>	<p>부 칙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 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 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p> <p><100>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8>까지 생략</p> <p><189>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자</p>

지방자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p>조 제6항·제8항·제9항, 제4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후단, 같은조 제2항 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같은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단서, 제163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8조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17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p> <p>제14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p> <p>〈101조〉부터 〈382〉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p> <p>제19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4조제4항, 제8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p> <p>제88조, 제90조 제3항 및 제10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p> <p>제89조 및 제108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p> <p>별표 3 제10호 중 “행정자치부”을 “행정안전부”로 한다.</p> <p>〈190〉부터 〈388〉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재정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재정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p> <p>제2조 삭제 <2016.11.29.></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p> <p>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p> <p>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p> <p>[전문개정 2011.8.4]</p> <p>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p> <p>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효율적인 예산 편성·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 	<p>제3조 삭제 <2016.11.29.></p> <p>제4조 삭제 <2016.11.29.></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p> <p>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8.4]</p> <p>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p> <p>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p> <p>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p> <p>② 삭제 <2016.5.29.> [전문개정 2011.8.4]</p> <p>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p> <p>② 삭제 <2014.5.28></p> <p>③ 삭제 <2014.5.28> [전문개정 2011.8.4]</p>	<p>제5조 삭제 <2014.11.28></p> <p>제6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8조 삭제 <2016.5.29.></p> <p>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p> <p>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p> <p>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p>	<p>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①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제9조 삭제 <2014.11.28></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p> <p>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p>	<p>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8></p> <p>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 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한정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28, 2015.5.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p>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외에 지방채발행 추가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6.28., 2008.2.29., 2009.7.30.,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p> <p>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조정하거나 지방채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p> <p>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명예퇴직 비용의 충당</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p> <p>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p> <p>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8.4.]</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법률 제13283호(2015.5.1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1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p> <p>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p> <p>〈개정 2016.3.29., 2016.5.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p> <p>19. 「택지개발촉진법」</p> <p>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p> <p>21.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p> <p>[본조신설 2014.5.28]</p> <p>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8.4]</p>	<p>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p> <p>③ 시·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p>	<p>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p>	<p>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p>② 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조 삭제 <2016.5.29.>	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5조 삭제 <2016.5.29.>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16.5.29.>	제16조(납입)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제17조(증권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p> <p>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p> <p>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p> <p>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p> <p>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p> <p>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p> <p>제17조의2 삭제 <2014.5.28></p> <p>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p> <p>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p> <p>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p>	<p>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p> <p>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p> <p>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p> <p>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p>	<p>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p>
<p>제2장 경비의 부담</p>	
<p>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8.4]</p>	<p>제20조(기명식·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p>
<p>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p> <p>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p>	<p>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p>③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8.4]</p> <p>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p> <p>[전문개정 2011.8.4]</p>	<p>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p> <p>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상환기일·추첨일시·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2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 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 중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p> <p>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5.5.13.,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p>	<p>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재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p>
<p>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p>	<p>제25조(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p>
<p>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p>	<p>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p> <p>[전문개정 2011.8.4]</p> <p>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p>제27조 삭제 <2016.11.29.></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p> <p>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6></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7.7.26.></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3.7.16, 2014.5.28., 2014.11.19., 2017.3.21., 2017.7.26.></p> <p>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p> <p>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p> <p>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p> <p>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p> <p>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신설 2013.7.16, 2014.11.19., 2015.12.29., 2017.7.26.〉</p> <p>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15.12.29〉</p> <p>[본조신설 2011.8.4]</p> <p>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② 행정안전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8.4]</p> <p>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7.7.26.></p> <p>② 행정안전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 2017.7.26.> [본조신설 2013.7.16]</p> <p>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행정안전부장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p> <p>③ 행정안전부장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5.28]</p> <p>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p> <p>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본조신설 2014.5.28]</p>	
<p>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8]</p>	
<p>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5.28]</p>	
<p>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p>	<p>제28조 삭제 <2016.11.29.></p>
<p>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 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p> <p>·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5.12.2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 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본조신설 2011.8.4.]</p> <p>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 	<p>지방재정법 시행령</p> <p>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p> <p>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p> <p>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p> <p>④ 삭제 <2011.9.6.></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5.28.></p> <p>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p> <p>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p> <p>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본조신설 2014.5.28]</p>	<p>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7.7.26.> [제목개정 2014.11.28.]</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p> <p>제30조 삭제 <2014.5.28></p>	<p>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30조의2 삭제 <2014.11.28.></p> <p>제30조의3 삭제 <2014.11.28.></p> <p>제30조의4 삭제 <2014.11.28.></p>
<p>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p>	<p>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두며,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 〈신설 2014.5.28.〉</p> <p>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p>	<p>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경비의 부담</p> <p>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p> <p>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p>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p> <p>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5.28.]</p> <p>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5.28.]</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p> <p>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5.28.]</p> <p>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p> <p>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p> <p>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돈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p> <p>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p> <p>[본조신설 2014.5.28]</p> <p>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p> <p>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p> <p>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p> <p>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p>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p>[본조신설 2014.5.28.]</p> <p>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14.5.28.]</p> <p>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12.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예 산</p>	
<p>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p>	<p>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7.7.26.></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p> <p>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 	<p>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용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p> <p>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p> <p>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2017.7.26.></p> <p>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p> <p>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p> <p>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p> <p>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p> <p>[전문개정 2011.8.4.]</p> <p>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p> <p>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8.4.]</p>	<p>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p> <p>[제목개정 2014.11.28.]</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8.4.]</p>	<p>제35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4.1.17., 2014.11.28.></p> <p>② 삭제 <2014.1.17></p> <p>③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7.></p> <p>④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10.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⑤ 국무총리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0.6.></p> <p>[전문개정 2012.1.31.]</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35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p> <p>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p> <p>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5.10.6., 2017.7.26.></p> <p>⑦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1.17.]</p> <p>제35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6.6.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p> <p>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p> <p>⑦ 실무위원회 위원 중 제1항제2호의 위원에 대한 추천의 철회와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에 관하여는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15.10.6., 2017.7.26.></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10.6., 2017.7.26.> [본조신설 2014.1.17] [중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2014.1.17>]</p> <p>제35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7.7.26.></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1.28., 2017.7.26.></p> <p>[본조신설 2014.1.17]</p> <p>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p> <p>① 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6.6.28.,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전년(전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년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p> <p>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 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p> <p>[본조신설 2014.11.28.] [중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7로 이동 <2014.11.28>]</p> <p>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①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p> <p><개정2017.7.26.></p> <p>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한다.</p> <p>[본조신설 2014.11.28., 2017.7.26.]</p> <p>제35조의7(지방세 감면의 제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을</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p>계산할 때 1천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0.6.,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까지: 100분의 15 2018년: 2017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2019년: 2017년과 2018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2020년 이후: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p>② 제1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2010년 감면 결산액인 3조4천775억원 초과분으로 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감면 등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과세·감면액 <p>[본조신설 2012.1.31] [제35조의5에서 이동 <2014.11.28>]</p> <p>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조정교부금: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p> <p>[전문개정 2011.8.4]</p>	<p>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p> <p>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p> <p>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 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14.11.28., 2016.8.29.></p> <p>④ 삭제 <2016.8.29.></p> <p>⑤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6.8.29.></p> <p>[제목개정 2014.11.28]</p>
<p>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p>	<p>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p> <p>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3.8]</p>	<p>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p> <p>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p> <p>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외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11.28]</p>
<p>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p>	<p>제37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는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p> <p>[본조신설 2014.11.28.]</p> <p>[제37조의2에서 이동 <2016.6.28.>]</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p>	
<p>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p> <p>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p>	<p>제37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32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5년을 말한다.</p> <p>② 법 제32조의5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산서 :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p>[본조신설 2016.6.28.]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로 이동 <2016.6.28.>]</p>
<p>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p>	<p>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6.28.〉</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7.7.26.〉</p> <p>[본조신설 2014.11.28]</p> <p>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p>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11.28.]</p> <p>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11.28.]</p> <p>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p> <p>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p> <p>[전문개정 2011.8.4]</p>	<p>③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위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6.28]</p> <p>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예 산</p> <p>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다른</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 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p>	<p>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전망치 등을 근거없이 기재한 경우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매년 8월31일까지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p> <p>[본조신설 2016.8.29.]</p> <p>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개정 2015.10.6., 2017.3.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2017.7.26.></p> <p>[전문개정 2011.8.4.]</p>	<p>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p> <p>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p> <p>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p> <p>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p> <p>[전문개정 2014.11.28.]</p>
<p>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p> <p>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8.4.]</p>	<p>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p>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8.4]</p>	<p>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p> <p>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본조신설 2011.9.6.]</p> <p>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0.12.20.,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6.6.28., 2017.7.26.></p> <p>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p> <p>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p> <p>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p> <p>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p> <p>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p> <p>② 삭제 <2014.11.28></p> <p>③ 삭제 <2014.11.28></p> <p>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p> <p>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14.11.28]</p> <p>제41조의2(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p>[전문개정 2011.8.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자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 투자 심사 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p>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11.28]</p> <p>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p> <p>[전문개정 2011.8.4]</p>	<p>제43조 삭제 <2008.10.20></p>
<p>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p>	<p>제44조 삭제 <2014.11.28></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4.5.28></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8.4]</p> <p>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예산액 기준)</p> <p>7. 성인지 예산서</p> <p>8. 성과계획서</p> <p>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p> <p>10. 명시이월 명세서</p> <p>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p> <p>12. 공유재산 관련 서류</p> <p>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p> <p>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p>[전문개정 2011.8.4]</p>	<p>제45조 삭제 <2014.11.28></p>
<p>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8.4]</p>	<p>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p> <p>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p>	<p>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p>	<p>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28></p> <p>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31></p> <p>③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제목개정 2014.11.28]</p>
<p>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p>	<p>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p>
<p>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1.3.8]</p> <p>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8.4]</p>	<p>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p>	<p>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p>[본조신설 2014.11.28]</p> <p>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 지방공기업의 현황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14.11.28]</p> <p>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증진</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 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p>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8.4]</p>	<p>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p> <p>②법 제48조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p>
<h3>제4장 결 산</h3>	
<p>제51조 삭제 <2016.5.29.></p>	<p>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51조의2 삭제 <2016.5.29.> 제52조 삭제 <2016.5.29.></p>	<p>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53조 삭제 <2016.5.29.></p> <p>제53조의2 삭제 <2016.5.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p> <p>제53조의3 삭제 <2016.5.29.></p> <p>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p>	<p>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p> <p>③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p> <p>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p>	<p>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6]</p> <p>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9.6, 2012.2.29, 2014.3.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p>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p> <p>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p> <p>③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1.3.8] [제목개정 2014.5.28]</p> <p>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p> <p>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p> <p>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p> <p>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p> <p>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3.8]</p> <p>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p> <p>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1.3.8]</p>	<p>제56조(예산배정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p>
<p>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p> <p>1.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2.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p> <p>3.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p> <p>4.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5.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 이행상황의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7.26.〉</p> <p>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p> <p>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p> <p>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항</p> <p>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p>	<p>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p> <p>③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5.12.29]</p> <p>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전문개정 2011.8.4]</p> <p>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p>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50조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15.1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p>	<p>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p> <p>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p> <p>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p> <p>②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5.12.4></p> <p>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p> <p>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p> <p>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p> <p>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비는 2016년 1월 10일까지만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15.12.4></p> <p>1.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p> <p>2.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경비</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결 산</p> <p>제59조 삭제 <2016.11.29.></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p>[전문개정 2014.5.28]</p> <p>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5.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p>제59조의2 삭제 <2016.11.29.></p> <p>제59조의3 삭제 <2016.11.29.></p> <p>제60조 삭제 <2016.11.29.></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3. 채권관리 현황</p> <p>4. 기금운용 현황</p> <p>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p> <p>6. 지역통합재정통계</p> <p>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정보</p> <p>8. 중기지방재정계획</p> <p>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p> <p>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p> <p>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 상황개요서</p> <p>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p> <p>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p> <p>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p> <p>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p> <p>가. 교부현황</p> <p>나. 성과평가 결과</p> <p>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p> <p>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p> <p>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p>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3> [전문개정 2014.5.28.] [제목개정 2015.5.13]</p> <p>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p> <p>[본조신설 2014.5.28]</p> <p>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5.12.29.></p> <p>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p> <p>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p> <p><개정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 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3. 상환일이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려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p> <p>④ 제1항 또는 제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 라 한다)의 장은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외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p> <p>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p> <p>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p> <p>③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p> <p>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이하 “긴급재정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p> <p>③ 긴급재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9.]</p> <p>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p> <p>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p> <p>⑥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행평가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p> <p>⑦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대해서는 제5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재정건전화계획”은 “긴급재정관리계획”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15.12.29.]</p> <p>제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p> <p>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p> <p>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기전에 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p> <p>④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⑤ 지방의회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12.29.]</p> <p>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p> <p>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p> <p>[본조신설 2015.12.29.]</p> <p>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12.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수 입</p>	
<p>제61조 삭제 <2016.5.29.></p> <p>제62조 삭제 <2016.5.29.></p>	<p>제61조 삭제 <2016.11.29.></p> <p>제62조 삭제 <2016.11.29.></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63조 삭제 <2016.5.29.></p> <p>제64조 삭제 <2016.5.29.></p>	<p>제62조의2(지방재정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11.29.]</p> <p>제62조의3 삭제 <2016.11.29.></p> <p>제63조 삭제 <2016.11.29.></p> <p>제63조의2 삭제 <2016.11.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p> <p>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2014.1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의 결산승인 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 현황보고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65조 삭제 <2016.5.29.></p>	<p>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p> <p>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p> <p>②재정보고서의 서식·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하 "재정분석·진단"이라 한다)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재정분석·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⑤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6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6.6.28., 2017.7.26.></p> <p>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 예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p> <p>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p>4.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제외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인 경우</p> <p>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p> <p>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2017.7.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④ 행정안전부장은 재정위기단체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⑤ 행정안전부장은 제2항에 따른 수시 모니터링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수준이 제1항에 따른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이행, 그 밖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2017.7.26.></p> <p>[본조신설 2011.9.6.]</p> <p>[제목개정 2014.11.28.]</p> <p>[시행일 : 2019.1.1.]제65조의제1항제2호, 제65조의2제1항제3호</p> <p>제65조의3(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①</p> <p>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66조 삭제 <2016.5.29.></p>	<p>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9.6.]</p> <p>제65조의4(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p>[본조신설 2011.9.6.] [제목개정 2014.11.28.]</p> <p>제6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법 제56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및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7.7.26.></p> <p>④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p> <p>⑦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5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p> <p>[전문개정 2016.6.28.]</p> <p>제66조의2(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재정위기 관리실무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③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개정 2017.7.26.></p> <p>④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개정 2017.7.26.></p> <p>⑤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사항 2.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지 출</p> <p>제67조 삭제 <2016.5.29.></p> <p>제68조 삭제 <2016.5.29.></p>	<p>운영에 필요한 사항</p> <p>⑦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위기관리 실무위원회 “로 본다.</p> <p>⑧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 위원 중 제2항제2호의 위원에 대한 추천의 철회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에 관하여는 제6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6.6.28]</p> <p>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69조 삭제 <2016.5.29.></p>	<p>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28></p> <p>④ 삭제 <2014.11.28></p> <p>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p> <p>[제목개정 2014.11.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6.6.28.></p> <p>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인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 예산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0분의 255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신청한다.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댓값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절댓값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분의 5이하인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9배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재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70조 삭제 <2016.5.29.></p>	<p>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6.28]</p> <p>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이하 “긴급재정관리인” 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p> <p>②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개정 2017.7.26.></p> <p>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p> <p>④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법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개정 2017.7.26.></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를 해임할 수</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71조 삭제 <2016.5.29.></p>	<p>있다.<개정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0조의3제5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 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긴급재정관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와 간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긴급재정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 및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7.26.></p> <p>[본조신설 2016.6.28]</p> <p>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긴급재정관리인이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된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개정 2017.7.26.></p> <p>②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외에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72조 삭제 <2016.5.29.></p>	<p>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p> <p>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인에게 긴급재정관리계획안 작성을 요청한 경우</p> <p>③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소속 직원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6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2. 법 제8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한다) 3. 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정원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 4.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계획 <p>[본조신설 2016.6.28.]</p> <p>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7.26.></p> <p>[본조신설 2016.6.28.]</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72조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의 경우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p>[본조신설 2016.6.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삭제 <2016.11.29.></p>
<p>제73조 삭제 <2016.5.29.></p> <p>제74조 삭제 <2016.5.29.></p> <p>제75조 삭제 <2016.5.29.></p> <p>제76조 삭제 <2016.5.29.></p>	<p>제73조 삭제 <2016.11.29.></p> <p>제74조 삭제 <2016.11.29.></p> <p>제75조 삭제 <2016.11.29.></p> <p>제76조 삭제 <2016.11.29.></p>
<p>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p>	
<p>제77조 삭제 <2016.5.29.></p>	<p>제77조 삭제 <2016.11.29.></p>
<p>제78조 삭제 <2016.5.29.></p>	<p>제78조 삭제 <2016.11.29.></p>
<p>제79조 삭제 <2016.5.29.></p>	<p>제79조 삭제 <2016.11.29.></p>
<p>제80조 삭제 <2016.5.29.></p>	<p>제80조 삭제 <2016.11.29.></p>
<p>제81조 삭제 <2016.5.29.></p>	<p>제81조 삭제 <2016.11.29.></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시 효</p> <p>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p> <p>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p> <p>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8.4]</p>	<p>제82조 삭제 <2016.11.29.></p> <p>제83조 삭제 <2016.11.29.></p> <p>제84조 삭제 <2016.11.29.></p> <p>제84조의2 삭제 <2016.11.29.></p>
<p>제10장 채권의 관리 <개정 2014.5.28.></p> <p>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지 출</p> <p>제85조(예산의 재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개정 2014.5.28></p> <p>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p> <p>[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p>	<p>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 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28></p>
<p>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p> <p>[전문개정 2011.8.4]</p>	<p>제86조 삭제 <2016.11.29.></p>
<p>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p> <p>③ 삭제 <2014.5.28></p> <p>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p> <p>[전문개정 2011.8.4]</p>	<p>제87조 삭제 <2016.11.29.></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신설 2014.5.28></p> <p>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p> <p>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p> <p>[본조신설 2014.5.28] [종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으로 이동 <2014.5.28>]</p>	
<p>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p> <p>[전문개정 2014.5.28]</p> <p>[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5.28>]</p>	
<h3>제11장 복 권</h3>	
<p>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p> <p>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p> <p>[전문개정 2011.8.4]</p>	<p>제88조 삭제 <2016.11.29.></p>
<h3>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h3>	
<p>제89조 삭제 <2016.5.29.></p>	<p>제89조 삭제 <2016.11.29.></p> <p>제89조의2 삭제 <2014.11.28.></p>
<p>제90조 삭제 <2016.5.29.></p>	<p>제90조 삭제 <2016.11.29.></p> <p>제90조의2 삭제 <2016.11.29.></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삭제 <2016.5.29.>	제91조 삭제 <2016.11.29.>
제92조 삭제 <2016.5.29.>	제92조 삭제 <2016.11.29.>
제93조 삭제 <2016.5.29.>	제93조 삭제 <2016.11.29.>
제94조 삭제 <2016.5.29.>	제94조 삭제 <2016.11.29.>
제95조 삭제 <2016.5.29.>	제95조 삭제 <2016.11.29.>
제13장 보 칙	
제96조 삭제 <2016.5.29.>	제96조 삭제 <2016.11.29.>
<p>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p>	
<p>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개정 2014.11.19., 2017.7.26.></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개정 2014.11.19., 2017.7.26.></p>	
<p>[본조신설 2014.5.28]</p>	
<p>제96조의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p>	
<p>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본조신설 2014.5.28]</p> <p>제14장 벌칙 <신설 2014.5.28.></p> <p>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p>[본조신설 2014.5.28]</p>	<p>제97조 삭제 <2016.11.29.></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14.5.28]</p>	<p>제98조 삭제 <2014.11.28.></p> <p>제99조 삭제 <2014.11.28.></p> <p>제100조 삭제 <2016.11.29.></p> <p>제101조 삭제 <2016.11.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삭 제 <2016.11.29.></p> <p>제102조 삭제 <2016.11.29.></p> <p>제103조 삭제 <2016.11.29.></p> <p>제103조의2 삭제 <2016.11.29.></p> <p>제104조 삭제 <2016.11.29.></p> <p>제105조 삭제 <2016.11.29.></p> <p>제106조 삭제 <2016.11.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채권과 채무</p> <p>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추심·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p>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p>[제목개정 2014.11.28]</p> <p>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하는 채권</p> <p>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p> <p>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p> <p>9.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p> <p>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를 말한다.</p> <p>2.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p> <p>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p> <p>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111조(납부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12조(독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p> <p>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 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p>제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 11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 1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을 때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을 때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p> <p>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p> <p>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1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보존하여야 한다.</p> <p>제119조(징수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단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한 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 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p> <p>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1.29]</p> <p>제121조(소멸에 관한보고)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또는 제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p> <p>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p> <p>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해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공익에 현저한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p> <p>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채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 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0.11.15></p> <p>제127조(집행권원의 취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28조(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에 대하여 은닉·손괴 그 밖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나.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다.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때 라. 제1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 그 밖에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채무자의 자력상태 그 밖의 사정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p> <p>제129조(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p> <p>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p> <p>③ 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p>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 ①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할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의 변경을 할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p>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부금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p> <p>제10장 삭 제 <2016.11.29.></p> <p>제134조 삭제 <2016.11.29.> 제135조 삭제 <2016.11.29.> 제136조 삭제 <2016.11.29.> 제137조 삭제 <2016.11.29.> 제138조 삭제 <2016.11.29.> 제139조 삭제 <2016.11.29.></p> <p>제11장 보 칙</p> <p>제140조 삭제 <2016.11.29.> 제141조 삭제 <2016.11.29.> 제142조 삭제 <2016.11.29.> 제143조 삭제 <2016.11.29.> 제144조 삭제 <2016.11.29.> 제145조 삭제 <2016.11.29.> 제146조(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재정 관계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재정 관계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부 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p>	<p>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1.28.] [중전 제146조는 제147조로 이동 <2014.11.28.>]</p> <p>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6.11.29.> 2. 삭제 <2016.11.29.> 3. 삭제 <2016.11.29.> 4. 삭제 <2016.11.29.> 5. 삭제 <2016.11.29.> 6. 법 제87조에 따른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 <p>② 삭제 <2016.11.29.> [본조신설 2014.8.6.] [제146조에서 이동 <2014.11.28.>]</p> <p>부 칙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p> <p><10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후단, 제24조, 제26조, 제27조 본문·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27조의3제1항·제2항, 제2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27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3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3항, 제48조의2제3항, 제54조 전단·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5조의2제1항·제2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제2항, 제55조의5제1항·제2항, 제56조의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2항·제4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p>	<p>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p> <p><190>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의2제2항, 제6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 제3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3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5조의4제1항·제3항, 제35조의5제2항제2호, 제35조의6제1항 전단·후단,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4항,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4항, 제47조제3항, 제49조3제5호,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6항·8항·9항, 제66조의제2항제1호·제3</p>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p>2항 전단·후단,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4제1항·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7제2항·제4항,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8조,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996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2항·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p> <p>제10조 및 제5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p> <p>제27조의2제7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p> <p><102>부터 <382>까지 생략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p> <p>제6조 생략</p>	<p>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9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108조제8호 및 제146조제1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p> <p>제6조,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및 제5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p> <p>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7항, 제3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3항·제6항, 제66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p> <p><191>부터 <388>까지 생략</p>

국 회 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40호, 2017.7.26.,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선통지 및 등록)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6.28.]

제3조(의석배정)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1994.6.28.>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0.2.16.>

제5조(임시회) ①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개정 2000.2.16.>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③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전 5일까지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1994.6.28., 2003.2.4.>

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5.7.28., 2016.12.16.>

1.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週)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전문개정 2000.2.16.]

제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본조신설 2000.2.16.]

제6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제7조(회기) ①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국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휴회) ①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국회는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03.2.4.>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6.28.]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2.3.7.>

제13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총선거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16., 2010.3.12.>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1994.6.28.〉

③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0.2.16.〉

제16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7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3.2.4.〉

제18조(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의장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2010.3.12.〉

1.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제19조(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①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07.12.14.>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본조신설 2002.3.7.]

제21조(국회사무처) ①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1994.6.28.>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2005.7.28.>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4.6.28.>

⑦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1조의2

[종전 제21조의2는 제22조의2로 이동 <1995.3.3.>]

제22조(국회도서관) ①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도서관장은 국회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행 한다.

⑤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18.]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4.]

제23조(국회의 경비) ①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소관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2.4., 2006.10.4.>

③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④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다음 회기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정부가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소관세출예산요구액의 삭감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삭감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국무회의 7일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2006.10.4.>

⑥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는 때에는 그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당해 국무회의 1일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 <신설 2000.2.16.>

제4장 의 원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신설 2005.7.28., 2016.12.16.>

제27조(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석방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일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은 제외한다)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3.8.13.]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30조(수당·여비) 의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제31조 삭제 <2014.3.18.>

제32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신설 1994.6.28.>

③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제33조(교섭단체) ①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6.28.>

③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명한다.

③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3. 정무위원회
 -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4. 기획재정위원회
 -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7. 외교통일위원회
 -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 8. 국방위원회
 - 가.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9. 행정안전위원회
 -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12. 보건복지위원회
 -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13. 환경노동위원회
 -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14.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15. 정보위원회
 -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 16.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전문개정 2008.8.25.]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한다. <개정 1994.6.28.>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常任委員"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5.7.28.>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1998.3.18., 2010.3.12.>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1994.6.28.>

② 삭제 <2008.8.25.>

③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0.6.29.>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5.7.28.]

제41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常任委員長"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本會議"라 한다)에서 선거한다. <개정 1994.6.28.>

③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신설 1994.6.28.>

④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⑤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專門委員"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6.28.>

②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③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④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신설 1994.6.28.>

⑤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2005.7.28.>

⑥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3조(전문가의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

[중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1991.5.31.>]

제44조(특별위원회) ①국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한 안전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28.>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14.5.14.>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한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 종료(제3항 단서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을 말한다)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전문개정 1994.6.28.]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

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2.4., 2010.5.28.>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 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제41조제3항 내지 제5항,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2.16.]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5.28.>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5.19.>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8., 2011.5.19.>

④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4.6.28., 2010.5.28., 2011.5.19.>

⑤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6.28., 2010.5.28., 2011.5.19.>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본조신설 1991.5.31.]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3.>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 ③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그 밖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28.]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2.4.>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9조로 이동 <1991.5.31.>]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1995.3.3., 1998.3.18., 2000.2.16.>

④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위원의 선임이 있을 후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2.4.>

⑦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1994.6.28.]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1조로 이동 <1991.5.31.>]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1. 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본조신설 2016.12.16.]

제5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990.6.29.>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2조로 이동 <1991.5.31.>]

제51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4조로 이동 <1991.5.31.>]

제52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전문개정 1994.6.28.]

제53조(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최(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6.12.16.>

② 삭제 <2016.12.16.>

③ 정례회의는 당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주요현안등을 심사한다.

④ 삭제 <2016.12.16.>

[전문개정 1994.6.28.]

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1.13.>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7조로 이동 <1991.5.31.>]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②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議員補助職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④이 법에 정한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6.28.]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58조로 이동 <1991.5.31.>]

제56조(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60조로 이동 <1991.5.31.>]

제5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情報委員會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5.7.28., 2012.5.25.>

③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⑥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4.3.18.>

⑦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2.16.>

⑧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1991.5.31.]

[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61조로 이동 <1991.5.31.>]

-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전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전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 ⑤ 조정위원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전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⑦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 ⑧ 조정위원회에서 그 활동기한 내에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을 종료한다.
-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5.25.]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案件全體에 대한 문제점과 당否에 관한 一般的 討論을 말하며 提案者와의 質疑·答辯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개정 2000.2.16.>

②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③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 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2.16., 2005.7.28.>

⑥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5.7.28.>

⑦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3.18.>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12.16.>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16.>

⑩ 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2.16., 2005.7.28., 2016.12.16.>

[전문개정 1994.6.28.]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헌법재판소는 중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중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6.12.16.]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전문개정 2012.5.25.]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6.>

[본조신설 2012.5.25.]

[제목개정 2016.12.16.]

제60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안에서 각 위원에 첫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6.28.〉

②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4조로 이동 〈1991.5.31.〉]

제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5조로 이동 〈1991.5.31.〉]

제62조(비공개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6조로 이동 〈1991.5.31.〉]

제63조(연석회의) ①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세입예산안과 관련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7조로 이동 〈1991.5.31.〉]

제63조의2(전원위원회) ①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전이나 본회의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 ③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 ④전원위원회는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삭제 <2005.7.28.>
- ⑥기타 전원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64조(공청회) ①위원회(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陳述人"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5.7.28.>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전·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6.28.>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기타 공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8조로 이동 <1991.5.31.>]

제65조(청문회)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1.5.1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 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5.7.28.>

③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전·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④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

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11.5.19.>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⑦ 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청문회에 준용한다.

⑧ 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9조로 이동 <1991.5.31.>]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人事聽聞會"라 한다)를 연다. <개정 2003.2.4.>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12.3.21., 2014.3.18., 2014.5.28.>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
3.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5.28.>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신설 2010.5.28.>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2007.12.14., 2010.5.28.>

⑥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010.5.28.〉

[본조신설 2000.2.16.]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③ 제1항의 안건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④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4.3.18.〉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71조로 이동 〈1991.5.31.〉]

제67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1991.5.31.〉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72조로 이동 〈1991.5.31.〉]

제68조(소위원회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6.28.〉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73조로 이동 〈1991.5.31.〉]

제69조(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5.7.28.〉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00.2.16.>
-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1.5.31., 2000.2.16., 2005.7.28.>
-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74조로 이동 <1991.5.31.>]

제70조(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①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아닌 의원도 또한 같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1994.6.28.>

⑥기타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

[종전 제70조는 제75조로 이동 <1991.5.31.>]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외에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을 준용

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동의자의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는 제76조로 이동 <1991.5.31.>]

제6장 회 의

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제72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일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6.28.]

제73조(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1997.1.13.>

②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역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③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78조로 이동 <1991.5.31.>]

제74조(산회)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개정 2010.5.28.>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8.>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제79조로 이동 <1991.5.31.>]

제75조(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국

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81조로 이동 <1991.5.31.>]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②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개정 2005.7.2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5.7.28.>

④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신설 2005.7.28.>

⑤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82조로 이동 <1991.5.31.>]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 [본조신설 2016.12.16.]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05.7.28.>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84조로 이동 <1991.5.31.>]

제7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85조로 이동 <1991.5.31.>]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3.2.4.〉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③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위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④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5.7.28.〉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86조로 이동 〈1991.5.31.〉]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③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본조신설 2005.7.28.]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8.]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①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예정인 의안목록, 국회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제1항의 국회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중 매일 발간한다.

③ 삭제 <2005.7.28.>

④국회공보의 발간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5.7.28.>

[본조신설 1991.5.31.]

[중전 제80조는 제87조로 이동 <1991.5.31.>]

[제목개정 2005.7.28.]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1.5.19.>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④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제75조에서 이동, 중전 제81조는 제88조로 이동 <1991.5.31.>]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89조로 이동 <1991.5.31.>]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83조(관련위원회회부) ①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④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2.>

⑤소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2.>

[본조신설 1991.5.31.]

[종전 제83조는 제90조로 이동 <1991.5.31.>]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①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재정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2.>

②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재정관련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10.3.12.>

④ 소관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8.]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개정 1994.6.28.>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할당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신설 1994.6.28.>

④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신설 1994.6.28., 2000.2.16.>

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1.5.31., 2002.3.7., 2003.2.4.>

⑥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삭제 <2003.2.4.>

⑧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91조로 이동 <1991.5.31.>]

[제목개정 1994.6.28.]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①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개정 2006.10.4.>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28.>

③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12., 2010.5.28.>

④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12.>

[본조신설 2001.12.31.]

[제목개정 2010.5.28.]

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본조신설 2005.7.28.]

[제목개정 2011.5.19.]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①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28.]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제92조로 이동 <1991.5.31.>]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의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代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5.25.]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5.25.]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③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5.25.>

④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신설 2012.5.25.>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제93조로 이동 <1991.5.31.>]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94조로 이동 <1991.5.31.>]

제88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95조로 이동 <1991.5.31.>]

제89조(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96조로 이동 <1991.5.31.>]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0.3.12.>

③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0.3.12.>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97조로 이동 <1991.5.31.>]

제91조(변안) ①본회의에 있어서의 변안동의를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②위원회에 있어서의 변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0.2.16.]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92조는 제99조로 이동 <1991.5.31.>]

제3절 의사와 수정

제93조(안건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93조는 제100조로 이동 <1991.5.31.>]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5.>

[본조신설 2002.3.7.]

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94조는 제101조로 이동 <1991.5.31.>]

제95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12.>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95조는 제102조로 이동 <1991.5.31.>]

제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6조는 제103조로 이동 <1991.5.31.>]

제9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을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수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7조는 제104조로 이동 <1991.5.31.>]

제98조(의안의 이송) ①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③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98조는 제105조로 이동 <1991.5.31.>]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7.28.>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③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條에서 "大統領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④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개정 2005.7.28.>

[전문개정 2000.2.16.]

제4절 발 언

제99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92조에서 이동, 종전 제99조는 제106조로 이동 <1991.5.31.>]

제10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9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0조는 제107조로 이동 <1991.5.31.>]

제101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에서 이동, 종전 제101조는 제108조로 이동 <1991.5.31.>]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2조는 제109조로 이동 <1991.5.31.>]

제103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3조는 제110조로 이동 <1991.5.31.>]

제104조(발언원칙) ①정부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②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2.4.>

③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한 총발언시간을 정하여 이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내에서 발언자수 및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를 정할 수 있다.

⑤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정한다.

⑥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6.28.]

제105조(5분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회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分自由發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개의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0.2.16.>

②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개의 4시간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0.2.16.>

③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4.6.28.]

[제목개정 1997.1.13.]

제106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9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6조는 제113조로 이동 <1991.5.31.>]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위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

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위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제107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100조에서 이동, 종전 제107조는 제114조로 이동 <1991.5.31.>]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0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8조는 제115조로 이동 <1991.5.31.>]

제5절 표 결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9조는 제116조로 이동 <1991.5.31.>]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7조로 이동 <1991.5.31.>]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0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1조는 제118조로 이동 <1991.5.31.>]

제112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1994.6.28., 2000.2.16.>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⑥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4.>

⑧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신설 2010.5.28.>

⑨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28.>
[제10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2조는 제119조로 이동 <1991.5.31.>]

제113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02.3.7.〉

[제10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3조는 제120조로 이동 〈1991.5.31.〉]

제114조(기명·무기명투표절차) ①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00.2.16.〉

②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4조는 제121조로 이동 〈1991.5.31.〉]

[제목개정 2000.2.16.]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본조신설 2002.3.7.]

제7장 회 의 록

제115조(회의록) ①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1994.6.28., 2005.7.28.〉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수
14.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처리보고서
19.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제10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5조는 제122조로 이동 <1991.5.31.>]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6조는 제123조로 이동 <1991.5.31.>]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③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신설 2003.2.4.>

④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7조는 제124조로 이동 <1991.5.31.>]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반포)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반포할 수 있다.
 - ⑥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8조는 제125조로 이동 <1991.5.31.>]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제119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제1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는 제126조로 이동 <1991.5.31.>]

제120조(국무위원등의 발언)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1991.5.31., 1998.3.18.>

[제1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0조는 제127조로 이동 <1991.5.31.>]

제121조(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6.28.>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6.28.>

[제1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1조는 제128조로 이동 <1991.5.31.>]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관계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⑤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1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2조는 제129조로 이동 <1991.5.31.>]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對政府質問"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3.2.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④의제별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2.4.>

⑤의장은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별 질문의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2.4., 2005.7.28.>

⑥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2.4.>

⑧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개의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본조신설 1994.6.28.]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①의원은 20인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條에서 "緊急懸案質問"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개의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③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

⑤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⑥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긴급현안질문의 절차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6.28.]

제9장 청 원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法人的 경우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3조는 제130조로 이동 <1991.5.31.>]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개정 2011.5.19.>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제1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24조는 제131조로 이동 <1991.5.31.>]

제125조(청원심사·보고등) ①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1991.5.31., 2016.12.16.>

⑤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16.>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16.>

⑦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2.16.>

⑧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16.12.16.>

⑨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6.>

[제1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5조는 제132조로 이동 <1991.5.31.>]

제126조(정부이송과 처리보고)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6조는 제133조로 이동 <1991.5.31.>]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7조는 제134조로 이동 <1991.5.31.>]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②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2.4.]

[제목개정 2010.3.12.]

제128조(보고·서류등의 제출 요구) ①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1.5.19., 2014.3.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2014.3.18.>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14.3.18.>

④위원회(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신설 1997.1.13., 2014.3.18.>

⑥제1항의 보고·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1.13., 2014.3.18.>

[전문개정 1994.6.28.]

[제목개정 2014.3.18.]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8.]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6.28.>

③제1항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29조는 제136조로 이동 <1991.5.31.>]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 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7조로 이동 <1991.5.31.>]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②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1조는 제138조로 이동 <1991.5.31.>]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는 제139조로 이동 <1991.5.31.>]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訴追議決書"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3조는 제140조로 이동 <1991.5.31.>]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제1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4조는 제141조로 이동 <1991.5.31.>]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제135조(사직) ①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8조에서 이동, 종전 제135조는 제142조로 이동 <1991.5.31.>]

제136조(퇴직) ①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011.5.19., 2013.8.13.>

②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43조로 이동 <1991.5.31.>]

제137조(결원통지) 의원이 결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7조는 제144조로 이동 <1991.5.31.>]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8조는 제145조로 이동 <1991.5.31.>]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1.5.31.>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9조는 제146조로 이동 <1991.5.31.>]

제140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1991.5.31.>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개정 1991.5.31.>

③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제13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0조는 제147조로 이동 <1991.5.31.>]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

심의회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4조에서 이동, 종전 제141조는 제148조로 이동 <1991.5.31.>]

제142조(의결) ①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②피심의원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본회의는 피심의원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의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3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2조는 제149조로 이동 <1991.5.31.>]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제13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3조는 제150조로 이동 <1991.5.31.>]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③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06.2.21.>

[제137조에서 이동, 종전 제144조는 제151조로 이동 <1991.5.31.>]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38조에서 이동, 종전 제145조는 제152조로 이동 <1991.5.31.>]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39조에서 이동, 종전 제146조는 제153조로 이동 <1991.5.31.>]

제147조(발언방해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제14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7조는 제154조로 이동 <1991.5.31.>]

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5.7.28.]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5.25.]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5.25.]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7.28.]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자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5.7.28.]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제14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0조는 제157조로 이동 <1991.5.31.>]

제151조(회의장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14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1조는 제158조로 이동 <1991.5.31.>]

제152조(방청의 허가) 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5조에서 이동, 종전 제152조는 제159조로 이동 <1991.5.31.>]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흥기를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제14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3조는 제160조로 이동 <1991.5.31.>]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②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4조는 제161조로 이동 <1991.5.31.>]

제14장 징계 <개정 2010.5.28.>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 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3.8.13.>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 1의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 1의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 7의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 7의3.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 [전문개정 2010.5.28.]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5.28.>

-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5.28.>
 -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8.>
 - ④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5.28.>
 - ⑤제3항과 제4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0.5.28.>
 - ⑥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신설 1994.6.28., 2010.5.28.>
 - ⑦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5.>
- [전문개정 1991.5.31.]
 [제14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6조는 제163조로 이동 <1991.5.31.>]
 [제목개정 2010.5.28.]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次回國會)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8.]

제158조(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2010.5.28.>

[전문개정 1991.5.31.]

[제15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8조는 제166조로 이동 <1991.5.31.>]

[제목개정 2010.5.28.]

제159조(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0.5.28.>

[전문개정 1991.5.31.]

[제152조에서 이동 <1991.5.31.>]

제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8.>

[전문개정 2005.7.28.]

제161조 삭제 <2010.5.28.>

제162조(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8.]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5.31., 2010.5.28., 2012.5.25., 2013.8.13.>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6호·제7호의2 또는 제7호의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2.5.25.>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 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5.31., 2012.5.25.>
 - ④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 ⑤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12.5.25.>
- [제155조에서 이동 <1991.5.31.>]

제164조(제명된 자의 입후보제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1991.5.31.>

[제156조에서 이동 <1991.5.31.>]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신설 2013.8.13.>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8.13.]

[중전 제165조는 제168조로 이동 <2013.8.13.>]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8.13.]

[중전 제166조는 제169조로 이동 <2013.8.13.>]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16장 보칙 <개정 2013.8.13.>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165조에서 이동 <2013.8.13.>]

제169조(규칙제정) ①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이 법 및 제1항의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전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제166조에서 이동 <2013.8.13.>]

부 칙 <법률 제4010호, 1988.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법에 의한 국회사무처도서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도서관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4237호, 1990.6.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4385호, 1991.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 제139조 내지 제142조·제156조 내지 제163조(윤리심사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155조제1항·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4542호, 1993.3.6.>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454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문화공보위원회·상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4761호, 1994.6.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의 임기는 제9조·제40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거는 제15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한 임기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4943호, 1995.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무통일위원회·행정경제위원회·재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보건사회위원회·노동환경위원회·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통일외무위원회·행정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통상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5154호, 1996.8.8.>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5293호, 19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5530호, 1998.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행정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정부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6266호, 2000.2.16.>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6590호, 2001.12.31.>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6657호, 2002.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의 당적보유금지의 적용)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의장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선된 다음 날"은 "이 법 시행일 다음 날"로 본다.

부 칙 <법률 제6855호, 20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6930호, 2003.7.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7311호, 2004.12.3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② 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614호, 2005.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 내지 ④7 생략

제41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⑩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⑪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134호, 200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261호, 2007.1.24.>

이 법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685호, 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857호, 2008.2.29.>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8867호,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9129호, 2008.8.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한다.

②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0047호, 2010.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0328호, 2010.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징계안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㉕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나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㉖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652호, 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416호, 2012.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453호, 2012.5.25.>

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5.22.>

부 칙 <법률 제11717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3호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1820호, 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108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9조의2, 제46조의2, 제48조, 제136조, 제155조,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은 제외하며, 제29조의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3호의 직을 포함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직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영리업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2422호, 2014.3.18.> (특별감찰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법률 제12502호, 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7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2582호, 2014.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2677호, 2014.5.28.> (방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법률 제12845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제2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4376호,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자동상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원은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4840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
-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

- 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4183호, 2016.5.29.>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법률 제1327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제정) 2010.07.01 조례 제 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창원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려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 방법, 기간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시 공보나 신문, 방송 및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입법예고문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 전문의 게재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제5조에서 작성한 입법예고문과 함께 예고 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진해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창원시 공고 제 호

창원시 000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 입법예고

「창원시 000 조례(규칙)」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 「창원시 000조례(규칙)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3. 주요내용

- 가.
- 나.
- 다.

4. 의견제출

- 가. 이 제정(개정·폐지)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참조 : 000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41-703/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로 87 창원시 000과(전화:055-212-XXXX, FAX:055-212-XXXX, E-Mail 0000)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에만 해당)

-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록

6.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000과 담당자 000(전화:055-212-XXXX)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의견처리결과 통보서

창 원 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자 :

제 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

1. 우리시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반영하게 되어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가. 제출의견

나. 처리결과

. 끝.

창 원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입법예고의견 처리결과

관련조문	예 고 내 용	의 견 내 용	처리결과	사 유

- 주) 1. 처리결과는 반영, 미반영, 일부반영으로 기재함
 2. A4 종으로 작성

창원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시행일 : 2017.02.28)

(제정) 2010.07.01 훈령 제 8 호
(일부개정) 2011.01.20 훈령 제123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1.12.31 훈령 제138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5.05.08 훈령 제222호
(일부개정) 2015.11.30 훈령 제235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17.02.28 훈령 제26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사무와 주민의 조례입법청구에 대한 처리 등 창원시 법제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적용되며, 다른 법령·조례·규칙·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란 조례·규칙·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헌법 및 법령의 범위에서 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3. “규칙”이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4. “훈령”이란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
5.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6. “입안”이란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7. “발의안”이란 해당사무의 담당부서에서 입안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기 전까지의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8. “원안”이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서류에 대하여 시장 또는 전결권자가 결재를 한 문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
9. “원본”이란 조례·규칙의 공포문과, 훈령·예규의 발령문으로 공포·발령권자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문서를 말한다.
10. “법령집 등”이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대한민국 법령 연혁집, 창원시 자치법규집 등 각종 법규집을 말한다.

제2장 자치입법

제1절 입법사무 처리절차

- 제4조(입법체제)** ① 자치법규의 입법은 입법하고자 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 부서”라 한다)에서 추진한다.
- ② 자치법규 등의 입안 시 입법의 용어·형식·체계 등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과 시의 「자치법규입안실무」에 따른다.
- ③ 중앙부처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협의, 인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 ④ 훈령 및 예규는 조례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입법안에 포함할 사항)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이유(제·개정 또는 폐지사유)
2. 주요내용
3. 제·개정안 또는 폐지안
4. 신·구 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함)
5. 관련부서 의견 및 사전협의 또는 승인사항
6. 관계법령 발췌내용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9. 현행 자치법규 등

제6조(입안시 유의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될 때에는 주된 부서에서 작성 하되, 협의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을 정확히 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치법규 등의 제명은 띄어쓰기를 하고,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띄어쓰기와,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치법규 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5. 발의안을 작성하기 전에 방침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경미한 사안은 소관 국·직속기관·사업소장의 결재를, 중요한 사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방침문서로 간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6.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하며, 승인신청은 소관 국·직속기관·사업소장의 전결로써 할 수 있다.
7. 주관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8.>
8. 입안서류는 반드시 관련부서의 협의와, 교육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반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 전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 2. 28.>

제7조(입법자료 요구·제출) ① 교육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의 입법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실·과·소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실·과·소장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조 례

제8조(조례사항) ① 조례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시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
4.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9조(입안요령) ① 조례안은 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폐지조례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령으로 입안한다.

1. 제정조례안
 - 가. 제정문을 두지 아니한다.
 -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한다.
 2. 전부개정조례안
 - 가. 제명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으로 한다.
 - 나. 부칙에서 현행 조례에 대한 폐지규정을 두지 아니한다.
 - 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현행 조례 전문을 첨부하여 그에 같음 한다.
 - 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예시와 같이 한다.
 3. 일부개정조례안
 - 가. 제명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한다.
 - 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 조문 신설 시에는 제○조의2, 제○조의3의 방식으로 한다.
 - 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예시와 같이 한다.
 4. 폐지조례안
 - 가. 제명은 “○○조례 폐지조례안” 으로 한다.
 - 나. 주요내용란에 “동조례 폐지” 라고 기재한다.
 - 다.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예시와 같이 한다.
- ② 제안이유는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배경 및 이유 등을 간략하게 서술식으로 작성한다.
- ③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내용을 조문순서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서 개조식으로 작성한다.
- ④ 참고사항으로 표준안, 방침결정문서, 관련사업계획서, 관련법령, 입법예고 결과, 현행 조례 등을 기재한다.

제10조(입안심사) ① 자치법규 등의 입안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법무담당 및 교육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0, 2011.12.31., 2015.5.8.)

1. 예비심사 자치법규로써의 형식요건, 상위법령 등에 저촉여부, 타 자치법규와의 관계, 입법선례, 자치법규로 제정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입안서류를 축조 심사하는 단계
 2. 최종심사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입법예고결과 반영여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제반사항을 심사하는 단계
- ② 제1항의 심사를 마친 조례·규칙의 입안서류는 창원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법무담당 및 교육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안심사와 동시에 법제처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 ④ 교육법무담당관 및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의 자문 내용이 자치법규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제11조(입안심사시 구비서류)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교육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1. 방침결정문서 원안 또는 표준안
 2.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3. 사전승인·협의·인가 등 관련 공문서
 4. 예산관련사항
 5. 관련법령 발췌 조문
 6.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 문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② 교육법무담당관은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이 제1항의 구비서류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수정·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수정·보완 요구를 받은 주관부서에서 수정·보완 요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은 해당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1.12.31)

제12조(처리절차) 조례안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관련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위원회 발의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침결정 또는 조례안 입안
2. 사전승인·협의 이행

3.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교육법무담당관 사전 심사(개정 2011.12.31)
4. 입법예고 또는 공개청문
 - 가. 입법예고 또는 공개청문 결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안 수정
5. 교육법무담당관에게 심사요청(입법예고 또는 공개청문으로 수정된 경우) (개정 2011.12.31)
6. 심의회에 심의 요구
7.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
8.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교육법무담당관에게 제출(개정 2011.12.31)
9. 기획담당관은 조례안을 시의회 부의안건으로 창원시 공보(이하 “공보” 라 한다)에 공고하고, 시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제13조(의결 조례안 처리) 교육법무담당관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 중에서, 시장이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수정의결 하였거나,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를 소관부서에 송부하여 재의요구 또는 공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제14조(재의요구 발의·심사) ①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발의하고 추진한다.

② 재의요구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10조의 입안심사에 준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재의요구절차 등) ① 제13조에 따라 조례안을 통보받은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재의요구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를 거쳐 늦어도 법정 재의요구기한 7일 전까지 시장의 결재를 받은 재의 요구안을 교육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로부터 재의요구안을 제출받은 교육법무담당관은,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③ 제2항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시의회에서의 제안설명 등은 소관부서의 해당 국·직속기관·사업소장이 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기관의 재의·제소지시 처리) ① 교육법무담당관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지시 또는 제소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 또는 제소의 법정기한의 촉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이 이를 우선 처리하고,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주관부서가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12.31)

- 제17조 (조례의 대법원 제소 등)** ① 제14조와 관련하여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어 오면, 교육법무담당관은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 ② 재의결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소관부서에서는 조례의 공포 또는 법령위반 판단과 함께, 조례의 대법원 제소여부에 대한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아 이를 즉시 교육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 ③ 제2항에 따라 제소방침이 결정되면 소관부서에서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소장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소기한 내에 대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은, 소송 수행 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 할 수 있다.

제18조(재의결과 보고) 교육법무담당관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제19조(제소결과 보고) 교육법무담당관은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거나, 그에 따른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2부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제3절 규 칙

- 제20조(규칙사항)** ①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 중 조례 이외의 사항과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다.
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21조(입안요령·심사·구비서류) 규칙안의 입안요령과 심사 및 구비서류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처리절차) 규칙의 처리절차는 제1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준용한다.

제4절 훈령 및 예규

제23조(입안요령) ① 훈령 및 예규는 조례작성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그 밖에 입안요령은 조례 및 규칙안의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제24조(처리절차) ① 훈령·예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2. 입안내용의 결재 및 발령
 - 가. 시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 다만, 경미한 사항은 부시장 전결로 함
 - 나. 최종 결재가 끝난 발의안에 대하여 교육법무담당관에게 발령 의뢰
 (개정 2011.12.31)
 - 다. 교육법무담당관에서 발령 및 공보에 공고 의뢰(개정 2011.12.31)
3. 발령이 완료된 훈령·예규의 원안과 원본을 발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교육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제5절 입법사항 보고

제25조(조례·규칙안 보고) ① 교육법무담당관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에 접수된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조례안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②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절 공포·발령 및 원본 등의 관리

제26조(자치법규의 공포) ① 조례 또는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하고, 조례·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교육법무담당관은 제25조에 따라 도에 보고 후 의견이 없는 경우에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개정 2011.12.31)

③ 조례의 공포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예시와 같다.

제27조(훈령·예규의 발령) ① 훈령·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여 훈령·예규발령대장에 등재하고, 훈령·예규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훈령·예규의 발령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예시와 같다.

제28조(원본 등의 관리) 자치법규 등의 원안과 원본은 합철하여 교육법무담당관이 관리하되, 조례·규칙·훈령·예규별로, 공포 발령순서대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제29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공보에 공고로써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제30조(공포일 등) 자치법규 등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을 공고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공고된 날로 한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공포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고된 날로 한다.

제31조(공포발령대장 관리) 자치법규 등의 공포 발령대장은 조례·규칙·훈령·예규별로 구분하여 교육법무담당관이 관리한다.(개정 2011.12.31)

제3장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제32조(청구인 명부 접수) ① 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가 있으면 민원담당부서장이 2부를 접수하여, 청구한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및 교육법무담당관에게 청구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② 주민의 입법청구 등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수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원담당부서장이 교육법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주관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31)

제33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대표자증명서교부 신청을 문서로 받은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청구인의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청구인 대표자 (이하 "대표자"라 한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원본과 함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즉시 교육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 취지 등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표자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청구사항 공표)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청구인명부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즉시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35조(청구인명부 열람·확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청구인 명부를 접수 받은 때에는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시와 읍·면·동별로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동안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해당 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여부, 중복서명 및 서명 요청기간 내의 서명 등 유효 서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된 무효서명 또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에서 서명의 무효결정여부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이유있음 : 청구인 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인과 대표자에게 통지
2. 이유없음 :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제36조(청구요건심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대한 공표 및 열람결과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 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의 결정이 있으면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인 대표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청구수리” 또는 “청구각하”를 통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한다.

제37조(조례안 검토의견서 작성 및 의회에의 부의) ① 제36조에 따라 청구가 수리되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12.3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 및 검토의견서를 교육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④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조례안의 시의회 부의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청구대상 검토) 대표자로부터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와 대표자 증명서발급신청이 있으면 해당사무 주관부서는 청구사안이 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반려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39조(조례안 처리절차) 주민이 입법 청구한 조례안의 입법절차 및 의회부의, 조례공포 또는 재의요구, 제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시장이 입안·제출하는 조례안 입안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법령해석

제40조(법령해석의 요청절차) ① 과·소장은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문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별칭 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그 밖의 모든 행정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에 하여야 한다.

제41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질의문을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질의요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계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4. 해석요청부서의 의견
5. 민원인 의뢰여부
6. 그 밖에 법령해석에 필요한 자료

②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 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회신내용 첨부 없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추록가제) 법령집 등을 보관하는 부서에서는 추록을 배부받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제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발령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훈령 제123호 2011.1.2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의 인사발령

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창원시 법제사무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제송무담당” 을 “법제담당” 으로 한다.

⑥ 생략

부 칙 <훈령 제138호 2011.12.31.>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규정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 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창원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호·제5호·제8호,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4조제1항제2호나목·다목·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8조, 제31조,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2항, 제37조제2항·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을 각각 “교육법무담당관” 으로 한다.

부칙 <훈령 제222호, 2015.5.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235호, 2015.11.30.>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260호, 2017. 2.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소 관 부 서	과	담당	담당자 성명	
검 토 사 항 (유·무란에○표)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유	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유	무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유	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		유	무
	5. 기타 문제점		유	무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자치법규안의 조문	과·소 검토안의 조문		검 토 사 유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bottom: 10px;"> 확인자 : 과·사업소장 (서명 또는 날인) 작성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div> <참고사항> 1. 자치법규안중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 사유란에 “의견 없음” 이라고 기재하여 회신한다. 2. 매 건별로 작성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4-1

등록번호	○○○ 과-@N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공 개

창원시 ○○○○○○○○ 조례안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자		
협 조		
	법제담당	
	○○담당	

창 원 시
(○ ○ ○ ○ 과)

[별지 제2호서식] 4-2

창원시 ○○○○조례안

- ※규칙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규칙」 으로 표기한다.
- ※훈령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규정」 으로 표기한다.
- ※예규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지침」 으로 표기한다.

목적 또는 취지

□ 현실태

□ 문제점

□ 대책



[별지 제2호서식] 4-3

창원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 . .

제 출 자 : 국 소 장

1. 제안이유

※ 제안이유에는 취지 및 배경을 간결하게 작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내용에 기재

2. 주요내용

가. ----- (안제○조)

나. ----- (안제○조)

※ 주요내용에는 그 자치법규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내용별로 간결하게 작성하며, 조문순서대로 작성하되, 주요내용 다음에는 근거조항을 괄호안에 명기(안 제○조)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

나. -----

다. -----

※ 참고사항에는 방침결정문서 또는 표준안, 사전승인신청 및 승인공문, 관련부서에서의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문서, 당해 자치법규안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이나 예산조치, 입법예고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4-4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조례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

(이하 문안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에는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령의 폐지,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4-1

등록번호	○○○ 과-@N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공 개

창원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자		
법 조		
	법제담당	
	○○담당	

창 원 시
(○ ○ ○ ○ 과)

[별지 제2호의2서식] 4-2

창원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규칙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규칙」 으로 표기한다.
- ※훈령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규정」 으로 표기한다.
- ※예규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지침」 으로 표기한다.

목적 또는 취지

□ 현실태

□ 문제점

□ 대책



[별지 제2호의2서식] 4-3

창원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 . .

제 출 자 : 국 소 장

1. 제안이유

※ 제안이유에는 취지 및 배경을 간결하게 작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내용에 기재

2. 주요내용

가. ----- (안제○조)

나. ----- (안제○조)

※ 주요내용에는 그 자치법규의 내용중 중요한 내용을 내용별로 간결하게 작성하며, 제도변경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도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간략하게 작성한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하였으나(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도록 함” 또는 -----하기 위하여 -----를 -----로 함 “ 등 으로 작성한다.

주요내용은 조문순서대로 작성하되, 주요내용 다음에는 근거조항을 괄호안에 명기(안 제○조) 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

나. -----

다. -----

※ 참고사항에는 방침결정문서 또는 표준안, 사전승인신청 및 승인공문, 관련부서에서의 의견 조회 및 회신관련문서, 당해 자치법규안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이나 예산조치, 입법예고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4-4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

(이하 문안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에는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령의 폐지,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5-1

등록번호	○○○ 과-@N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공 개

창원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자		
법 조		
	법제담당	
	○○담당	

창 원 시
(○ ○ ○ ○ 과)

[별지 제2호의3서식] 5-2

창원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규칙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규칙」 으로 표기한다.
- ※훈령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규정」 으로 표기한다.
- ※예규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지침」 으로 표기한다.

목적 또는 취지

□ 현실태

□ 문제점

□ 대책



[별지 제2호의3서식] 5-3

창원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 . .

제 출 자 : 국 소 장

1. 제안이유

※ 제안이유에는 취지 및 배경을 간결하게 작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내용에 기재

2. 주요내용

가. ----- (안제○조)

나. ----- (안제○조)

※ 주요내용에는 그 자치법규의 내용중 중요한 내용을 내용별로 간결하게 작성하며, 제도변경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도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간략하게 작성한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하였으나(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도록 함” 또는 -----하기 위하여 -----를 -----로 함 “ 등 으로 작성한다.

주요내용은 조문순서대로 작성하되, 주요내용 다음에는 근거조항을 괄호안에 명기(안 제○조) 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

나. -----

다. -----

※ 참고사항에는 방침결정문서 또는 표준안, 사전승인신청 및 승인공문, 관련부서에서의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문서, 당해 자치법규안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이나 예산조치, 입법예고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5-4

“일부개정시의 개정조례안 예시문”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공무원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무원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중 “공무원수당지급에 관한” 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부양가족이 3명이상인 자” 를 “3년 이상 도서벽지에 근무한자” 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병역법」에 따라 입대휴직한 자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이 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부나 모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 을 별도로 지급한다.

제8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00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00 조례” 제12조를 삭제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창원시 공무원수당지급에 관한 조례</p> <p>제2조(지급범위) ① 이 조례에 의한 수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p> <p>1. ~ 4.(생략)</p> <p>5. 도서벽지 근무자로서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자</p> <p>제3조(지급중지) ① 수당을 지급받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p> <p>1. ~ 5. (생략)</p> <p><신설></p> <p>제7조(기능직수당) ① (생략)</p> <p>② (생략)</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창원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p> <p>제2조(지급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p> <p>1. ~ 4.(현행과 같음)</p> <p>5. 도서벽지 근무자로서 3년 이상 도서벽지에 근무한 사람</p> <p>제3조(지급중지) ①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p> <p>1. ~ 5.(현행과 같음)</p> <p>6. 「병역법」에 따라 입대휴직한 사람</p> <p>제7조(기능직수당)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기능직공무원이 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부나 모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에는 월5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p>												
<p>[별표 1] 수당지급내역서</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30%;">지급대상</th> <th style="width: 50%;">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20px;">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p>[별표 1] 수당지급구분표</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30%;">지급대상</th> <th style="width: 50%;">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20px;">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 현행 및 개정안의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내용이나 <신설> 및 <삭제> 등에는 밑줄을 그어야 한다.

※ 신규 조문 대비표에는 부칙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 한다

※ 박스 내의 좌우 여백 5P

[별지 제2호의4서식] 4-1

등록번호	○○○ 과-@N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공 개

창원시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자		
법 조		
	법제담당	
	○○담당	

창 원 시
(○ ○ ○ ○ 과)



[별지 제2호의4서식] 4-2

창원시 ○○○○○조례안

- ※규칙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규칙」 으로 표기한다.
- ※훈령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규정」 으로 표기한다.
- ※예규안을 입안하는 때에는 「조례」 대신 「지침」 으로 표기한다.

목적 또는 취지

□ 현실태

□ 문제점

□ 대책

창원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 . .

제출자 : 국 소 장

1. 제안이유

※ 제안이유에는 취지 및 배경을 간결하게 작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내용에 기재

2. 주요내용

“동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가. -----
- 나. -----
- 다. -----

※ 참고사항에는 방침결정문서 또는 표준안, 사전승인신청 및 승인공문, 관련부서에서의 의견 조희 및 회신관련문서, 당해 자치법규안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이나 예산조치, 입법예고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4-4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조례 일부개정 [전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 . .
제 출 자 : 국 소 장

년 월 일 창원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창원시 ○○○조례 일부개정[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조 제○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재의요구이유

- -----

- -----

2. 첨부서류

- 창원시 ○○○○조례 일부개정 [전부개정] 조례안
- 관계법령발췌서
 - 법 제○○조
 - 법 시행규칙 제○조
-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4호서식]

조례안 재의요구 및 재의결과 보고					
조례명					
종류	제정()	개정()		폐지()	
제안자	창원시장()			의회의원()	
의결일자		이송일자		재의요구기한	
재의요구일		재의결일		재이송일자	
재의결 요구내용 (문제규정)					
재의결 요구이유 (서술식)					
재의결과 (개조식)					
표결사항	제적 의원수	명	출석	명	찬성() 반대() 기타()
특기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조례안 재의에 따른 제소결과 보고				
조례명				
종류	제정()	개정()	폐지()	
제안자	창원시장()		의회의원()	
의결일자		이송일자	재의요구기한	
재의요구일		재의결일	재이송일자	
대법소원일		대법원판결일		
판결요지	주문			
	이유			
특기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제 명			
제 안 자	시장(), 의회의원(), 주민 ()		
규제개혁위원회	제00회 ('00.00.00)	규 제 심 사 결 과	
조례규칙심의회	제000회 심의회 ('00. 00. 00)		
의 회 의 결 일	'00. 00. 00	이 송 일	'00. 00. 00
공 포 예 정 일 (공포게시예정일)	'00. 00. 00 ('00. 00. 00)	재 의 요 구 기 한	'00. 00. 00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			
관 련 중 기 관			
제 정·개 폐 사유			
주 요 내 용			
위 원 회 관 련			
검 토 의 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8호서식]

“조례 공포문의 예시”

창원시의회 제0000회 임시회(제 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000조례 일부개정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창 원 시 장 0 0 0 (서명) (직인)

0000년 0월 0일

창원시 조례 제000호

창원시 000조례 일부개정 [전부개정] 조례

창원시 0000조례 일부[전부] 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중 “000” 을(를) “000” (으)로 한다.

제0조제0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0조제3항 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규칙 공포문의 예시”

제○○회 창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창원시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창 원 시 장 ○ ○ ○ (서명) (직인)

○○○○년 ○월 ○일

창원시 규칙 제○○○호

창원시 ○○○○규칙 폐지규칙

창원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훈령·예규 발령문의 예시”

창원시 ○○○○규정 일부개정 [전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창 원 시 장 ○ ○ ○ (서명) (직인)

○○○○년 ○월 ○일

창원시 규정 제○○○호

창원시 ○○○○규정 일부개정 [전부개정] 규정

창원시○○○○규정 일부[전부] 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항제○호 중 “○○○○” 을(를) “○○○” (으)로 한다.

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예규)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 11. 30>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성별)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 구 종 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input type="checkbox"/> 폐지 청구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감사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직인			
비고 : 청구종류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60g/m²)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 11. 30>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청구 종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input type="checkbox"/> 폐지 청구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감사청구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 입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 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				
비고 : 청구종류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 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60g/m²)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 11. 30>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 종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input type="checkbox"/> 폐지 청구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감사청구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 입 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성별)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창 원 시 장 귀하				
비고 : 청구종류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60g/m²)

[별지 제17서식]

조례 제·개정 청구의 수리·각하여부 결정 통지

○ 「지방자치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년 ○월 ○일 대표자 ○○○가 제출한 창원시 ○○조례 일부개정〔전부개정〕조례안 입법청구에 대하여, 제○○회 창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다음과 같이 수리(또는 각하)합니다.

[수리(또는 각하) 사유]

- 청구제외대상 해당여부 : 해당 없음(또는 해당함)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
- 법정 주민연서수 충족여부 : 유효 서명수 ○○○명으로 충족
(또는 불충족)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 ※ 창원시 법정 주민연서수 : ○○○명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년 ○월 ○일

창 원 시 장



[별지 제18서식]

조례의 제정·개폐청구 처리대장

일련 번호	청구일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처리사항	비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 (인쇄용지 60g/m²)

(※ A4규격용지로 좌철할 수 있도록 서식을 작성 사용한다)

[별지 제19서식]

의견서

창원시 ○○ 조례 일부개정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자 : 창원시장

○ 지난 ○○○○년 ○월 ○일 대표자 ○○○가 창원시장에게 입법 청구한 창원시 ○○조례 일부개정 [전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내용]

1. -----은 ○ ○ ○ 법 제○ ○ 조에 위반

- -----
- -----

2. -----은 ○ ○ ○ 법 제○ ○ 조에 위반

- -----
- -----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행정국 회계과)

- (제정) 2010.07.01 규칙 제 38호
(일부개정) 2011.01.20 규칙 제 185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03.15 규칙 제 190호
(일부개정) 2011.12.31 규칙 제 209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12.31 규칙 제 216호
(일부개정) 2012.01.31 규칙 제 218호
(일부개정) 2013.03.15 규칙 제 260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일부개정) 2013.04.15 규칙 제 267호
(일부개정) 2013.09.30 규칙 제 27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12.30 규칙 제 289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12.24 규칙 제 33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12.24 규칙 제 336호
(일부개정) 2015.12.28 규칙 제 36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5.12.28 규칙 제 37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24.]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시의 본청을 말한다.
2. 관·담당관·과는 관서의 관·담당관·과(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0, 2014.12.24.)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의 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는 사무국장을 말한다.

-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소관부분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 2. 주임직은 소관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4.12.24.>
 -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 ④ 회계관계 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 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24.>
- ⑤ 제4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12.24.>

- 1. 본청
 - 가. 징수관 : 경제국장 <개정 2014.12.24.>
 - 나. 분임징수관 : 세정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관·담당관·과장(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4.12.24.>
 - 다. 재무관 : 행정국장 <개정 2014.12.24.>
 - 라.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각 관·담당관·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마. 총괄채권관리관 : 경제국장 <개정 2014.12.24.>
 - 바. 채권관리관 : 소관 관·담당관·과장

- 사.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4.12.24.>
 - 아. 부채관리관 : 소관 관 · 담당관 · 과장
 - 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4.12.24.>
 - 차. 기금운용관 : 소관 관 · 담당관 · 과장
 - 카. 통합지출관 : 회계과장
 - 타. 지출원 : 경리담당주사
 - 파. 수입금출납원 : 세정담당주사, 세입운용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주사
 -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관 · 담당관 · 과의 서무업무담당주사
 - 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각 관 · 담당관 · 과의 담당 선임자
 - 너.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 더. 물품출납원 : 계약담당주사
 - 러. 분임물품출납원 : 각 관 · 담당관 · 과 주무담당주사
2. 시의회
- 가. 징수관 : 사무국장
 - 나. 분임징수관 : 의회담당관
 - 다. 재무관 : 사무국장
 - 라. 분임재무관 : 의회담당관
 - 마.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 바. 부채관리관 : 사무국장
 - 사.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담당 선임자
 - 자.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3. 제1관서(읍·면·동은 제5호에서 지정)
-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 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 사. 기금운용관 : 소관 과장
 - 아.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자.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담당주사
 - 차.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경리업무담당주사
 - 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담당 선임자

4.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라.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 마.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주사(단, 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서무담당자)
- 바.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수입업무담당주사(단, 담당주사가 없을 시는 수입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자)
-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단, 담당주사가 없을 시는 서무업무담당자)

5. 읍·면·동

- 가. 징수관 : 읍·면·동장
- 나. 재무관 : 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다. 채권관리관 : 읍·면·동장
- 라.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 마.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
-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담당 선임자
-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1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신설 2011.3.15) <개정 2014.12.24.>

-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미만)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미만)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4.12.24.〉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권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4.12.24.〉

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에 따른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개정 2014.12.24.〉

[제목개정 2014.12.24.]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 일자, 인수·인계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4.12.24.>

제2장 예 산

제1절 예산편성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담당관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의 각 과장과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과 및 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경제국장 및 세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15., 2014.12.24.>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의 실·국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 년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담당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제출 시까지 해당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15, 2014.12.24.〉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과 예산담당관은 의회사무국장, 주관 국장 또는 주관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경제국장과 세정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15, 2014.12.24.)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4.〉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2.24.〉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담당관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각 관·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 2014.12.24)

② 본청 각 관·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 2014.12.24)

③ 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각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4.〉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에 따라 본청 각 관·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시장의 결재

(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관·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 2014.12.24.>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의 각 관·담당관·과장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 2014.12.24.>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담당관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각 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2절 예산의 집행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각 관·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4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 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과 세정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 2014.12.24.)

② 예산담당관은 본청 각 관·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및 그 밖의 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분기별 배정 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각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0., 2014.12.24.>

③ 본청의 각 관·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및 그 밖의 관서는 추가 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0, 2014.12.24)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담당관이 행한다. <개정 2014.12.24.>

② 예산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 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 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③ 본청 각 관·담당관·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국,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담당관은 예산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출 예산을 재무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6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세정 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 2014.12.24.>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면·동에 재배정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담당관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담당관은 예산 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임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과장 및 세정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담당관은 예산원부(별지 제17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각 관·담당관·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과의 주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8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 2014.12.24.)

③ 예산담당관 및 각 관·담당관·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같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0, 2014.12.24.)

제21조(예산집행 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부시장, 실·국장, 관·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0)

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31)

2. 실·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와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한 복지급여, 예산서상 단위사업으로 확정명

시된 예산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관한사항

3. 관·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공사 및 토지매입 1억원, 제조·용역 및 그 밖에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0)
-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 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신설 2014.12.24.>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에게,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1조 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단서신설 2011.3.15, 개정 2013.9.30., 2014.12.24.)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2014.12.24.>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비 [제7호에서 이동 <2014.12.24.>]
-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4.>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수입, 세외 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관·담당관·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은 1건당 추정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0> <단서개정 2014.12.24.>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4.>

④ 각 관·담당관·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사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14.12.24.>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년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4.>

③ 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26조(집행상황의 조사) 예산담당관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과장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각 관·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 2014.12.24., 2015.12.28>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에 따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2015.12.28>

제2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본청의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는 주관 과장, 의회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의 각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22호서식)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4.>

제3장 결 산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입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4.>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4.12.24.>]
<개정 2014.12.24.>

④ 결산서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제3항에서 이동 <2014.12.24.>] <개정 2014.12.24.>

⑤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4.12.24.>]

제31조 삭제<2014.12.24.>

제32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관·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

제4장 수 입

제33조(징수결정의 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결손 처분(별지 제23호서식부터 제29호서식까지)을 하였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28>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계산서(별지 제3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입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 날

제37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로 본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그 밖에 용도의 서식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의 제1호·제2호·제4호 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3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4.12.24.>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제40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3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1조와 제110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39호서식 및 제40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42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④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24.>

제44조 삭제 <2014.12.24.>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43호서식과 별지 제4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 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과 별지 제46호부터 48호서식까지)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51호서식 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53호서식과 별지 제54호서식)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창원시세 부과징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장 지 출

제1절 총 칙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과장은 각 관·담당관·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5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0, 2014.12.24.)

② 세정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의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58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③ 세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0조(자금배정) ① 세정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9조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과장, 지출원,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6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정과장이 본청 관·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의 배정지시서(별지 제59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1.20)

③ 세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세정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의 세정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60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받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4.>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2.24.>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개정 2014.12.24.>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설 2014.12.24.>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개정 2012.1.31, 2013.4.15, 2014.12.24.>
[제3호에서 이동 <2014.12.24.>]

5. 공무원여비 <신설 2014.12.24.>

제53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4.15>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제50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개정 2014.12.24.>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등 확인 <개정 2014.12.24.>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관리시스템에 입력 <개정 2014.12.24.>

제53조의2(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 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4.]

제53조의3(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4.]

제54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을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개정 2014.12.24.>
5. 직무수행경비개정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61호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개정 2014.12.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지우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제55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개정 2014.12.24.>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의 납부상황은 공제액 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 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62호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서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4.>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4.>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게 갈음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게 갈음한다.

[제목개정 2014.12.24.]

제58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금, 개산금에 대한 정산금,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9호의2서식까지)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0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 구분(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59조(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73호 서식)또는 제54조제2항규정의 약식 지급명령(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71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제60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72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74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75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2014.12.24.> (본조신설 2011.3.15)

- 제63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62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76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제64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 한계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 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조직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77호서식)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제65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78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 제66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74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24.>

- 제67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제출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 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시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4.>

⑥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4.>

제68조 삭제<2014.12.24.>

제69조 삭제<2014.12.24.>

제70조 삭제<2014.12.24.>

제2절 수입대체경비

제71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관·담당관·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정과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담당관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0, 2014.12.24.)

제72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73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에게 예산초과집행승인을 요청(별지 제127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28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납세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③ 세정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은 제73조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29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대체수지

제75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 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 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 현금간의 수입 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6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부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7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6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8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희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희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80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해야 한다.

-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9조(세입·세출외 현금 종류) 세입·세출외 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그 밖의 사무관리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

제8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82호서식)를 정리한다. <개정 2013.4.1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82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삭제 <2014.12.24.>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관서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2014.12.24.>

제81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 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83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주사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5>

③ 세입·세출외 현금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84호서식)에 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4.12.24.>

-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1)

제82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납입서에 따른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83조(위탁금의 취급) ① 시는 당해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4조(준용규정) 제82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5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6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7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제88조(유가증권의 보관)**
- 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절 출납원

- 제90조(현금출납부)**
-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86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인 1명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91조(현금의 보관)**
-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는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2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93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4조(검사의 입회) 제93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5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87호서식)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제96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7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입담당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8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잃어버린 사실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99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0조(인계의 절차) ① 제99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88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89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6절 금 고

제103조 (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라 시의 금고취급금융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24.>

1. 삭제 <2014.12.24.>
2. 시금고 : 시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하는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4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 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5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7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90호 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4.12.24.>

제108조(장부의 비치) ① 시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91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92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93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94호서식)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95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5호서식)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96호서식)
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95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5호서식)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92호서식)으로 한다.

제109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0조(수납절차) ① 시금고에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를 포함한다)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1조(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3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97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4조(송금지급 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제115조(집합지급 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집합지급금액 명세표(별지 제98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4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6조(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98호서식)의 합계 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다를 때 <개정 2014.12.24.>

제117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 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는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년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118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9조(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0조(세입세출일계표) ①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 일계표(별지 제99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99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4.>

제121조(세입세출월계표) ① 시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102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제122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 현금일계표(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103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4.>

제123조(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4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계 약

제125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04호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105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66호서식) 또는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별지 제67호서식)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66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63호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14.12.24.>

제126조 삭제(2011.3.15)

제127조(계약실적 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107호 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 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108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개정 2014.12.24.>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 서식까지)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2014.12.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31., 2014.12.24.)

제7장 계산증명

제129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30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오른쪽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바로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 위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31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111호서식)임을 표시하고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2조(외국문의 증빙서류)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부쳐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33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2.24.〉

제134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등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112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공동서명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관·담당관·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년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요구서(별지 제1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0)

-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년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된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35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11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101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의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6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115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77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116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고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이를 각 각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9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1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117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142조(계산서의 수정·변경 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3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목개정 2014.12.24.]

제144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제8장 장 부

제145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30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정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51호서식)

제146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18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19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7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에 따른 시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목개정 2014.12.24.]

제148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20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99호서식)로 같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9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0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목개정 2014.12.24.]

제150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20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78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62호서식)

② 제149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21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51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22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23호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2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 장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82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5호서식)

제153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54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55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지체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견출)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6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제목개정 2014.12.24.>

제157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6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58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24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9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0조(채권의 발생·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26호서식)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1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7조 부채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목개정 2014.12.24.]

제10장 보 칙

제162조(재정사항 공포) 시장은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공포한다.

제163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제164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법 및 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 규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제165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채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6조 (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부 칙 <규칙 제38호 201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마산시 재무회계 규칙, 진해시 재무회계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마산시 재무회계 규칙, 진해시 회계 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85호 2011.1.2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담당관·과” 를 “관·담당관·과” 로 한다.

별표 1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문화도서관사업소” 로 하며, 제12호를 삭제한다.

⑪부터 <12> 까지 생략

부 칙 규칙 제190호 2011.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5항은 계약업무 통합부서가 설치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09호 2011.12.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정책실장” 을 “기획홍보실장” 으로, “세정기획담당주사” 를 ” 세정담당주사 “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기획정책실장” 을 “기획홍보실장” 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 <규칙 제216호 2011.12.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18호 2012.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본청의 전결처리사항 공통사무 제3호사목(1)(가) 중 “5억원” 을 “10억원” 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1)(나) 중 “5억원” 을 “10억원” 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2)(가) 중 “3억원” 을 “5억원” 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2)(나) 중 “3억원” 을 “5억원” 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3)(가) 중 “2억원” 을 “3억원” 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3)(나) 중 “2억원” 을 “3억원” 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260호 2013.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징수관:행정국장” 을 “징수관:경제재정국장” 으로, “총괄채권관리관:행정국장” 을 “총괄채권관리관:경제재정국장”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국장” 을 “경제재정국장”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정책실장” 을 “기획홍보실장”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국장” 을 “경제재정국장” 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 <규칙 제267호, 201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0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274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리관 : 행정국장” 을 “경리관 : 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국장” 을 “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 을 “안전행정국장” 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289호, 2013.12.3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규칙 제336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제13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규칙 332호, 2014.12.2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관?담당관?과"를 각각 "관?담당관?과(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제재정국장"을 각각 "경제국장"으로,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관·담당관·과장"을 "관·담당관·과장(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경제재정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담당관"으로,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경제재정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41조 중 "국·본부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창원중심보건소"를 "창원보건소"로 하고, 같은 란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호의2. 투자유치서울사업소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국"을 각각 "실·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을 "실·국"으로,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120호서식부터 별지 제123호서식까지 중 "국과·팀"을 각각 "실·국 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 <규칙 제362호, 2015.12.28.>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투자유치서울사업소"를 "서울사업소"로 한다.

③ (생략)

부 칙 <규칙 제370호,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 4. 15. 2013. 12. 30. 2014. 12. 24. 2015. 12. 28)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3조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그 밖의 관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기술센터 2. 창원보건소 3. 마산보건소 4. 진해보건소 5. 창원소방본부 6. 창원소방서 7. 마산소방서 8. 삭제 <2013. 12. 30> 9. 상수도사업소 10. 하수관리사업소 11. 삭제 <2013. 12. 30> 12. 도시개발사업소 13. 차량등록사업소 14. 문화도서관사업소 14호의2. 서울사업소 15. 의창구청 16. 성산구청 17. 마산합포구청 18. 마산회원구청 19. 진해구청 	

[별표 2]

경비별 지출원인 정리구분표(제58조 관련)

구 분	정 리 시 기	구 분
1.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비 ○ 급여류 ○ 수당류 ○ 보조금, 부담금 및 교부금 ○ 출자금, 출연금 ○ 제 세 ○ 기 타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교부결정시) 출자 또는 출연결정시 납부결정시(신고시) 지출결정시	해당 기간분 급여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출자, 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2. 계약에 의한 경비 ○ 보험료 ○ 용자금 ○ 공사비 ○ 기 타	납부결정시 용자결정시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청구받은 때)	납부결정액 용자를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받은 금액)
3. 그 밖의경비 ○ 전출금 ○ 보증금 ○ 특별판공비 ○ 기 타	전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지출결정시(계약체결시) 지출결정시	전출을 요하는 금액 납부를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계약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별표 3]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제58조 관련)

구 분	정 리 시 기	구 분
1. 관서의 일상경비	교부결정시	교부금액
2.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결정시	전용결정금액
3. 과년도 지출	과년도지출 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이월예산 등에 의한 지출	지출 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5. 지출금의 반납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반납금액
6. 계속비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7.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시	채무부담행위액

